

현안분석 2007-

법령용어 연구 07-02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중진 · 이진국 · 이천현

황태정 · 권수진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Prote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related law

연구자 : 도중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oh, Joong-Jin

이진국(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Lee, Jin-Kook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Lee, Cheon-Hyoun

황태정(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Hwang, Tae-Jeong

권수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weon, Su-Jin

2007. 10. 31.

국문요약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보호 관련법령들은 그 규범적용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용어는 매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법령의 체계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청소년보호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용어를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법령이 다수 법제화되어 있음에 반해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주로 법률이나 사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실무자들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분야를 전공한 실무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라 실무가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의 적용자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수용자(규범수범자)인 실무가와 청소년들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문장과 법령용어가 평이하고 이해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 관련 현행 법령의 용어는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 실무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청소년보호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용어를 해설하여 그 이해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한다.

※ 키워드 : 법령용어, 청소년관련법령, 알기 쉬운 법령, 법언어학, 입법학, 법령용어순화

Abstract

Prote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related law need t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because of incomprehensibility to cause expression chinese and japanese. Therefore, this report studies on a question and a scheme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national defense related law classify a field.

This field classify terminology of the organization, a personnel management administration,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bout terminology and sentence in prote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related law. In particular, this report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 provisions in prote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related law. This suggestion make the good use of research material for establish and revision in law.

As well, This suggestion hope to study a synthesis under conditions of insufficiency opinion about prote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related law. This suggestion hope to make an opportunity of comparison and examination about opinion of another reciprocity.

※ Key words : Prote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related law,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terminology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9
I. 연구의 목적	19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 가납(假納) → 임시납부(臨時納付), 임시로 냄	21
◆ 가위탁(假委託) - 임시위탁(臨時委託)	22
◆ 가퇴원(假退院) → 임시퇴원(臨時退院)	23
◆ 가해제(假解除) → 임시해제(臨時解除)	24
◆ 각호(各號)의 1 →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	25
◆ 간수(看守) → 관리(管理), 지킴	27
◆ 간인(間印) → 걸침도장	28
◆ 감면(減免) → 감경(減輕) 또는 면제(免除)	29
◆ 개시(開始) → 시작(始作)	30
◆ 개요(概要) → 주요 내용	31
◆ 개선(改悛)의 정(情)이 현저(顯著)한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33
◆ 개폐(改廢) → 개정(改正) 및 폐지(廢止)	33
◆ 갱신(更新) → 연장(延長), 변경(變更), 다시 시작	34
◆ 격리(隔離) → 떼어놓음	36
◆ 경과(經過) → 과정(過程), 지남	37
◆ 경미(輕微) → 가벼움, 사소함	38
◆ 경유(經由) → 거침	39

◆ 경정(更正) → 변경(變更)	41
◆ 경중(輕重) → 가볍고 무거움	42
◆ 경질(更迭) → 바뀜	43
◆ 경(輕)한 → 가벼운	44
◆ 계구(戒具) → 보호기구	44
◆ 계도(啓導) → 지도(指導)	45
◆ 계리(計理) → 계산(計算)	47
◆ 계속(係屬) → 한자 함께 씀	47
◆ 계호 → 경계감호, 경계보호, 보호	48
◆ 고수부지(高水敷地) → 둔치	49
◆ 고지(告知) → 알림, 통지(通知)	49
◆ 고(告)하다 → 알리다	51
◆ 공술(供述) → 진술(陳述)	52
◆公安(公安) → 공공(公共)의 안녕(安寧)과 질서(秩序)	52
◆ 공여(供與) → 줌	53
◆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54
◆ 공제(控除) → 뺌	55
◆ 공중(公衆) → 사람들	56
◆ 공표(公表) → 공개발표(公開發表)	57
◆ 공(供)하다 → 사용되다	58
◆ 과(課)하다 → 부과(附課)하다	59
◆ 관람(觀覽) → 구경	59
◆ 교부하다(交付-) → (내어) 주다	60
◆ 교정(矯正) → 바로잡음	61
◆ 구두(口頭) → 말	62
◆ 구술(口述) → 말	63
◆ 구(求)하다 → 요구하다, 듣다	64
◆ 궁박(窮迫) → 매우 어려운	65

◆ 기립(起立) → 일어섬	65
◆ 기망(欺罔) → 속임(수)	66
◆ 기산(起算) → 계산을 시작	67
◆ 기일(期日) → 날짜	68
◆ 기재(記載) → 적음	69
◆ 기(基)하다 → 터잡다	70
◆ 기한(期限) → 마감, 마감 날짜, 마감 날	71
◆ 기타(其他) → 그 밖에, 그 밖의	72
◆ 긴급(급속)을 요하는 경우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	73
◆ 날인(捺印) → 도장을 찍음	74
◆ 납부(納付) → 냄	76
◆ 낭독(朗讀) → 읽음	77
◆ 내(內) → 안	79
◆ 내지(乃至) → 부터, 또는	80
◆ 녹음대(錄音帶) → 녹음테이프	81
◆ 녹취(錄取) → 녹음(錄音)	82
◆ 농아자(聾啞者) → 듣고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84
◆ 누설(漏泄) → (다른 사람이) 알게 하다	85
◆ 단행(但行) → 단서(但書)	86
◆ 당부(當否) → 옳고 그름	87
◆ 당해(當該) → 그, 해당(該當)	87
◆ 달성(達成) → 이룸	88
◆ 대여(貸與) → 빌려 줌	89
◆ 대부(貸付) → 빌려 줌	90
◆ 대행(代行) → 대신(代身)	91
◆ 도과(徒過) → 지남	91
◆ 도모(圖謀) → 꾀함	92
◆ 도화(圖畫) → 그림	93

◆ 독립(獨立)하여 → 독립적으로	94
◆ 동거(同居) → 함께 삶	95
◆ 동일(同一)한 → 같은	95
◆ 등본(謄本) → 한자 함께 씬	96
◆ 로부터 → 부터	97
◆ 만료(滿了) → 끝남	98
◆ 말소(抹消) → 지움	99
◆ 말일(末日) → 마지막 날	99
◆ 매개(媒介) → 이어줌	100
◆ 면전(面前) → 앞	101
◆ 명료(明瞭) → 분명(分明)	101
◆ 명시(明示) → 밝힘	102
◆ 명시한 의사(明示한 意思) → 명시적 의사(明示的 意思)	103
◆ 명(命)하다 → 명령(命令)하다	104
◆ 모해(謀害) → 모함하여 해침	105
◆ 몰취(沒取) → 몰수(沒收)	105
◆ 무상(無償)으로 → 대가 없이	106
◆ 묵인(默認) → 알고도 넘겨버림	107
◆ 문란(紊亂) → 어지러움	108
◆ 미약(微弱) → 부족함	108
◆ 반출(搬出) → 내어 감	109
◆ 반(反)하다 → 거스르다	110
◆ 반환(返還) → 돌려줌	111
◆ 발로(發露) → 드러남	112
◆ 발문(發問) → 질문(質問)	112
◆ 발부(發付) → 발급(發給)	113
◆ 발(發)하다 → 내리다, 발급(發給)하다	114
◆ 발행 → 펴냄	115

◆ 방임(放任) → (내)버려둠, 돌보지 않음	116
◆ 배포(配布) → 나누어 줌	117
◆ 번잡(煩雜) → 복잡(複雜)	118
◆ 범정(犯情) → 범죄의 정황	118
◆ 범(犯)하다 → 저지르다	119
◆ 변개(變改) → 고침	119
◆ 변별(辨別) → 분별(分別)	120
◆ 별단(別段)의 → 특별(特別)한	121
◆ 별도(別途)의 → 딴, 다른, 특별한, 달리 정한	122
◆ 보정(補正) → 보완(補完)	123
◆ 보지(保持) → 지킴	124
◆ 복귀(復歸) → 되돌아감	124
◆ 부가(附加) → 덧붙임, 더함	125
◆ 부기(附記) → 덧붙여 적음	126
◆ 부대시설(附帶施設) → 딸린 시설	127
◆ 부득이(不得已) → 어쩔 수 없음	128
◆ 부상(負傷) → 다침	128
◆ 부실(不實) → 거짓, 허위(虛僞)	129
◆ 부조(扶助) → 도움	129
◆ 부지(敷地) → 터, 토지(土地)	130
◆ 부(付)하다 → 부치다	131
◆ 부합(附合) → 맞음	132
◆ 불가피(不可避)한 → 피할 수 없는	132
◆ 불가항력(不可抗力) → 어쩔 수 없음	134
◆ 불구(不具) → 신체장애(身體障礙)	134
◆ 불복(不服)이 있으면 → 불복(不服)하는 경우	135
◆ 비행(非行) → 현재대로	136
◆ 사료(思料) → 판단(判斷)	137

◆ 사자(死者) → 죽은 사람	138
◆ 사전(事前) → 미리, 앞선	138
◆ 사체(死體) → 시체(屍體)	139
◆ 산입(算入) → 넣어 계산함, 계산 포함	140
◆ 산정(算定) → 계산(計算)	141
◆ 상당(相當) → 적절(適切)	142
◆ 상시(常時) → 늘, 항상	143
◆ 상용(常用) → 일상적으로 이용	144
◆ 상주(常住) → 계속 머무름	144
◆ 생계비(生計費) → 생활비(生活費)	145
◆ 생(生)하다 → 생기다	146
◆ 석명(釋明) → 석명(釋明), 설명(說明) 또는 증명(證明)	146
◆ 선거(船車) → 선박과 차량	147
◆ 선불(先拂) → 선지급(先支給)	149
◆ 선용(善用) → 바르게 씀, 활용(活用)	149
◆ 성명(姓名) → 이름	150
◆ 성행(性行) → 성품(性品)과 행실(行實)	151
◆ 소관(所管) → 담당(擔當)	153
◆ 소명(疏明) → 한자 함께 씀	153
◆ 소요되다 → (비용이) 들다, (시간이) 걸리다	154
◆ 소정(所定)의 → 정(定)해진	156
◆ 소지(所持) → 지님	156
◆ 소할(所轄) → 관할(管轄)	157
◆ 소환(召喚) → 출석요구(出席要求)	159
◆ 소훼(燒燬) → 태움	161
◆ 송달(送達) → 현재대로	161
◆ 송부(送付) → 보냄	163
◆ 송치하다 → 보내다, 넘겨받다	164

◆ 수개(數箇) → 여러 개	165
◆ 수괴(首魁) → 우두머리	166
◆ 수령(受領) → 받음	167
◆ 수리(水利) → 물의 이용	168
◆ 수리(受理) → 받음, 받아들임	168
◆ 수수(授受) → 주고받음	169
◆ 수립(樹立)하다 → 세우다	170
◆ 수수(收受) → 받음	171
◆ 수수(授受) → 현재대로	172
◆ 수여(授與) → 줌	173
◆ 수용(受用) → 받아들임	174
◆ 수인(數人) → 여러 명	175
◆ 수종(數種) → 여러 종류	178
◆ 수죄(數罪) → 여러 범죄	178
◆ 수진(受診) → 진료(診療)	179
◆ 수통(數筒) → 여러 통	180
◆ 수탁(受託) → 위탁(委託)받음	180
◆ 수치심(羞恥心) → 부끄러움	182
◆ 순응(順應) → 순순히 따름	182
◆ 순차(順次) → 차례	183
◆ 승계(承繼) → 이어받음	184
◆ 시일(時日) → 일시(日時)	184
◆ 시정(是正) → 바로잡음	185
◆ 시찰(視察) → 살펴봄	187
◆ 신문(訊問) → 심문(審問)	188
◆ 신빙(信憑) → 신뢰(信賴)	190
◆ 신용(信用) → 신뢰(信賴)	192
◆ 심판(審判) → 심리(審理)와 재판(裁判)	193

◆ 실비(實費) → 실제 비용(實際 費用)	193
◆ 심신장애(心神障礙) → 정신장애(精神障礙)	194
◆ 심(甚)히 → 매우	198
◆ 아동(兒童) → 어린이	198
◆ 알선(斡旋) → 주선(周旋)	199
◆ 압수(押收) → 현재대로	200
◆ 야기(惹起) → 일으킴	201
◆ 양정(量定) → (양, 정도) 결정(決定)	201
◆ 양형(量刑) → 형량결정(刑量決定)	203
◆ 엄수(嚴守) → 지키м	203
◆ 여부(與否) → 할 것인지(한지) 아닌지	204
◆ 연계(連繫) → 연결(連結)	205
◆ 연령(年齡) → 나이	206
◆ 열람(閱覽) → 읽어(훑어) 보다	206
◆ 열석(列席) → 출석(出席)	207
◆ 영아(嬰兒) → 갓난아기, 젓먹이아기	208
◆ 예납(豫納) → 미리 냄	209
◆ 오기(誤記) → 잘못된 기록	210
◆ 오욕(汚辱) → 오염(汚染) 및 모욕(侮辱)	210
◆ 오류(誤謬) → 잘못	211
◆ 오인(誤認) → 잘못 인정, 잘못 생각	212
◆ 완납(完納) → 다 냄	213
◆ 완료(完了) → 끝냄, 마침	214
◆ 외(外) → 밖, 이외, 제외	215
◆ 요급처분(要急處分)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	216
◆ 요(要)하다 → (필요로) 하다, 요구되다	217
◆ 용모(容貌) → 생김새	218
◆ 우려(憂慮) → 염려(念慮)	219

◆ 우체(郵遞)에 부치다 → 우편(郵便)으로 보내다	221
◆ 원본(原本) → 한자 함께 씌	222
◆ 원인(原因) → 사유(事由)	222
◆ 위증(僞證) → 현재대로	224
◆ 위해(危害) → 해로움, 해침	225
◆ 위촉(委囑) → 맡김, 위탁(委託), 임명(任命)	226
◆ 유년(幼年) → 어림	228
◆ 유류(遺留) → 남겨 놓음, 남김	228
◆ 유발(誘發) → 일으킴	229
◆ 유사(類似) → 비슷함	230
◆ 유서(宥恕) → 용서(容恕)	231
◆ 유해(有害) → 해로움	232
◆ 은폐(隱蔽) → 숨김, 감춤	233
◆ 응하다 → 응답하다, 따르다	233
◆ 의제(擬制) → 간주(看做), 봄	235
◆ 의(依)한/의(依)하여 → 따른/따라	236
◆ 의의신청(疑義申請) → 재판해석(裁判解釋)의 신청(申請) ..	237
◆ 이를 → 삭제	238
◆ 이송(移送) → 현재대로	239
◆ 이수(履修) → 마치다, 밟다	241
◆ 인계(引繼) → 넘겨줌	242
◆ 인도(引渡) → 넘겨줌	243
◆ 인장(印章) → 도장(圖章)	244
◆ 인정신문(認定訊問) → 인적사항신문(人的事項訊問)	245
◆ 인(因)한/인(因)하여 → 말미암은/말미암아	246
◆ 일시(一時) → 잠시, 잠깐	247
◆ 일시(一時)에 → 한 번에	248
◆ 일자 → 날짜	249

◆ 입증(立證) → 증명(證明)	249
◆ 입회(立會) → 참관(參觀)	250
◆ 자(者) → 사람	252
◆ 자복(自服) → 스스로 고백(告白)	253
◆ 저지(沮止) → 막음	254
◆ 전단(傳單) → 쪽지	255
◆ 전파(傳播) → (널리) 퍼뜨림	256
◆ 정상(情狀) → 사정, 형편	256
◆ 정역(定役) → 노역(勞役)	257
◆ 정황(政況) → 상황	258
◆ 제척(除斥) → 직무집행배제(職務執行排除)	259
◆ 조각(阻却) → 배제(排除)	260
◆ 조장(助長) → 부추김, 북돋움	261
◆ 종결(終結) → 끝맺음	261
◆ 종료(終了) → 끝냄, 끝남	262
◆ 죄상(罪狀) → 구체적 범죄사실(具體的 犯罪事實)	263
◆ 죄적(罪迹) → 범죄(의) 흔적	264
◆ 죄증(罪證) → 증거(證據)	264
◆ 중(重)한/경(輕)한 → 무거운/가벼운	266
◆ 증적(證迹) → 증거(證據)의 흔적(痕迹)	266
◆ 지득(知得) → 알게 됨	267
◆ 지려천박(智慮淺薄) → 지적능력부족(知的能力不足)	268
◆ 지속적(持續的)으로 → 꾸준히, 끊임없이	268
◆ 지장(指章) → 손도장	269
◆ 지체(遲滯)없이 → 즉시(即時)	269
◆ 직근(直近) → 바로 위(의)	270
◆ 참작(參酌) → 고려(考慮)	271
◆ 참질(僭竊) → 불법점령(不法占領)	272

◆ 처단(處斷) → 처벌(處罰)	272
◆ 첨부(添附) → 붙임	273
◆ 초래(招來) → 가져옴	273
◆ 초일(初日) → 첫 날	274
◆ 촉탁(囑託) → 현재대로	275
◆ 최초(最初)/최후(最後) · 최종(最終) → 처음 · 첫/마지막 ...	275
◆ 취하(取下) → 철회(撤回), 취소(取消)	276
◆ 타인(他人) → 다른 사람	277
◆ 탈환(奪還) → 도로 뺏음	278
◆ 통고(通告) · 통보(通報) · 통지(通知) → 알림 · 보고함	278
◆ 통산(通算) → 합산(合算)	280
◆ 퇴거(退去) → 나감	281
◆ 특칙(特則) → 특례(特例)	282
◆ 파기(破棄) → 현재대로	283
◆ 파기자판(破棄自判) → 파기(破棄)와 직접판결(直接判決) ...	284
◆ 판명(判明) → 밝혀짐	285
◆ 포상(褒賞) → 상을 줌	286
◆ 한(限)하여 → (경우에)만	287
◆ 한도(限度) → 범위 안	288
◆ 함에는 → 하는 경우에는	288
◆ 항거(抗拒) → 저항(抵抗)	289
◆ 해득(解得) → 알아봄	290
◆ 해촉(解囑) → 해임(解任)	291
◆ 해태(懈怠) → 게을리 함	292
◆ 해(害)하다 → 해치다	292
◆ 행상(行狀) → 행형 태도(行刑 態度)	294
◆ 행(行)함 → 함, 수행(遂行)함	294
◆ 허부(許否) →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	295

◆ 허위(虛僞) → 거짓	296
◆ 현상(現狀) → 현재(現在)의 상태(狀態)	297
◆ 현저(顯著) → 뚜렷함, 두드러짐	298
◆ 호선(互選) → 서로 투표하여 뽑음	299
◆ 호창(呼唱) → 부름	300
◆ 환부(還付) → 반환(返還), 돌려줌	300
◆ 흠결(欠缺) → 흠	301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보호 관련법령들은 그 규범적용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용어는 매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법령의 체계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청소년보호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용어를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법령이 다수 법제화되어 있음에 반해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주로 법률이나 사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실무자들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분야를 전공한 실무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라 실무가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의 적용자들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수용자(규범수범자)인 실무가와 청소년들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문장과 법령용어가 평이하고 이해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 관련 현행 법령의 용어는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 실무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청소년보호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민주

화와 법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용어를 해설하여 그 이해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한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현행 법령에서 주요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소년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에 대한 해설과 그 순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은 물론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간보고서, 국립국어원의 법령관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해설과 순화기준을 마련하였음을 밝힌다.

법령용어 순화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청소년 법령에만 한정된 용어가 아니라 법령에 있는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순화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관련 실무가와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 보고서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법령 단위의 용어순화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용어해설에 초점을 맞춘 사전식 배열을 통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재하였다.

◆ 가납(假納) → 임시납부(臨時納付), 임시로 냄

“가납(假納)”이란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가(假)’라는 접두사는 일본어투의 용어가 우리말에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어로는 ‘かり’라 읽으며 명사 앞에 붙어서 ‘가짜·거짓’ 또는 ‘임시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우리 형사소송법 제334조와 동일한 내용의 일본형사소송법 제348조(가납부의 재판)는 “... 검찰관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임시로(假(かり)に)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법제처 정밀 검토 요청에 따라 법원의 법령용어 정비 의견을 회신한 1995년 11월 29일 ‘법원행정처 법령용어 순화정비 검토의견’¹⁾(이하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이라 함)에서는 이 용어를 ‘임시납부’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으며(‘권장사용’ 의견), 법제처는 1996년 간행된 ‘법령용어순화편람’²⁾(이하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이라 함)과 2003년 간행된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³⁾(이하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이라 함)에서 ‘임시납부’, ‘임시로 냄’으로 바꿀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생각건대 구체적인 조문의 사용례를 토대로 볼 때 가납이 ① 조문의 표제어로 사용되거나, ② 형사소송법 제477조에서처럼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간략함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납부’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은 “납부”가 축약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1) “1995.11.29.자 법원행정처 법령용어 순화정비 검토의견”,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2004.4.7.), 국회사무처 법제실, 57면 이하 참조. 이 국가기관 합동회의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외에 법제처, 법원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등 다섯 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2) 법령용어순화편람(일상생활 공용법령용어), 법제처, 1996.
3)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제2집/상] 권장사용용어, 법제처, 2003.

적으로 ‘냄’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문장 끝에서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로 내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임시납부)판결)

-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금액을 임시로 낼 것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등의 집행)

-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임시납부)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80조 (가납(→임시납부)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임시납부)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임시납부)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임시납부)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 가위탁(假委託) - 임시위탁(臨時委託)

“가위탁(假委託)”이란 소년부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년감호에 관하여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 기타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假)’는 일본어로 ‘임시’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임시위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 될 것으로 본다.

◆ 가위탁(假委託) - 임시위탁(臨時委託)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6 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계기한 범위에 한한다.

2. 제5조제2호에 계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거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임시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 가퇴원(假退院) → 임시퇴원(臨時退院)

“가퇴원(假退院)”이란 소년원에 수용중인 보호소년을 소년원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보호관찰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로 퇴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가(假)’라는 접두사가 명사 앞에 붙은 경우이므로 ‘임시퇴원’이라고 고칠 수 있다.

소년원법 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 또는 가퇴원(→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변경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가해제(假解除) → 임시해제(臨時解除)

“가해제(假解除)”는 성적이 양호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도 ‘임시적인’이라는 뜻을 더하는 ‘가(假)’라는 일본어식 접두사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는 ‘임시’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이 용어를 ‘임시해제’로 고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④ 제32조제3항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동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임시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 (관장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3. 보호관찰의 가해제(→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가해제)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임시해제)할 수 있다.

② 가해제(→임시해제)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는 계속된다.

◆ 각호(各號)의 1 →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

- ③ 심사위원회는 가해제(→임시해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임시해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가해제(→임시해제)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 각호(各號)의 1 →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

“각호의 1”은 일정한 일반조항을 두고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나열하는 형태의 조문구조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는 일본형사소송법의 ‘各號の一’이라는 표현(제60조, 제96조 등)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는 우리말로는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부인 국회는 국회 법률안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및 심사와 의안의 정리를 위하여 국회사무처 예규로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법률용어표준화기준’⁴⁾(2007.4.16. 국회사무처 예규 제22호 (의장결재) 일부개정, 이하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이라 함)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제28조, 제41조, 제77조 등) 및 2002년 개정 소년심판규칙(제4조 제1항, 제10조, 제15조, 제30조 등)은 이미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법령용어의 통일화의 관점에서 민사소송법 및 소년심판규칙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부 법령의 경우 일부개정과 함께 새로운 조문이 편입되면서 기존의 조문에는 “각호의 1”이, 새로운 조

4) 이 기준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매년 개정하여 발간하는 ‘입안방법’이라는 책자에 같은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기준’(2007.4.16. 국회사무처 예규 제21호 (의장결재) 일부개정)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문에는 “각호의 어느 하나”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과 제16조의3 제1항·제6항), 법령 전체에 대한 용어의 통일적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소년법 제 4 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원법 제19조 (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 간수(看守) → 관리(管理), 지킴

4. 병역, 학업, 질병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한 때
5. 기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간수(看守) → 관리(管理), 지킴

“간수(看守)”는 사전적으로 ‘물건 따위를 잘 거두어 보호하거나 보관함’이라는 의미이다. 일본어식 표현으로 우리말로 순화가 요구된다. 1995년 형법개정시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와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의 “간수”가 “관리”로 대체되었고,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한 “간수”를 “관리”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2002 민사소송법 개정과 민사집행법 제정시 법원이 한자어의 순화를 위하여 만든 지침인 ‘한자어의 순화’⁵⁾(이하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라 함)와 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⁶⁾(이하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라 함) 또한 ‘관리’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은 ‘지킴’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성 및 쓰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관리’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간수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지킴’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본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관리)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한자어의 순화”,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2004.4.7.), 국회사무처 법제실, 64면 이하 참조.

6) 정완/윤동호/김정태,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船車)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형법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지키거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

⑤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간수를(→피고인을 지킬 것을) 명할 수 있다.

◆ 간인(間印) → 걸침도장

“간인(間印)”은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음. 또는 그 도장’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 용어에 대하여 한자를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서 일반인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순화용어로 ‘사잇도장’, ‘거멀도장’, ‘걸침도장’, ‘이음도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는 ‘사잇도장’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걸침도장’이

◆ 감면(減免) → 감경(減輕) 또는 면제(免除)

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결침도장을 찍다’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결침도장을 찍은)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결침도장을 찍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③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결침도장을 찍은)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 감면(減免) → 감경(減輕) 또는 면제(免除)

“감면(減免)”은 사전적으로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이라는 의미이다. 법령에서 감면이란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이 ‘축약된 용어 사용금지’를 표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살리기 위해서 ‘감경 또는 면제’로 풀어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은 ‘줄임(낮춤) 또는 면제’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줄임(낮춤) 대신에 ‘감경’이라고 써도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감경 또는 면제’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감경 또는 면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조세감면(→조세의 감경 또는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개시(開始) → 시작(始作)

“개시(開始)”란 사전적으로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이라는 의미이다. “개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지만, ‘시작(始作)’이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개시”를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실제로 이를 법률개정에 반영하였다(제21조, 제169조). 청소년관련법령 또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소년법 제19조 (심리불개시(→심리불시작)의 결정)

- ①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시작)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심리불시작)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할 수 있다.
- ④ 소년부판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심리불개시(→심리불시작)의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심리불개시(→심리불시작)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20조 (심리개시(→심리시작)의 결정)

- ①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개시(→심리시작)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22조 (심리개시(→심리시작)결정의 취소)

심리개시(→심리시작)결정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가 개시(→시작)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요(概要) → 주요 내용

“개요(概要)”는 ‘간결하게 추려 낸 주요 내용’을 뜻하는 한자말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과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은 ‘대강’이나 ‘줄거리’ 등으로 바꾸어 쓰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강(大綱)’은 오히려 ‘개요’ 보다 더 어려운 용어로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은 이 용어 또한 ‘줄거리’나 ‘요지’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각건대 개요(概要), 대강(大綱), 요지(要旨) 등은 모두 어려운 한자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 보기 어렵다.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우리말 ‘줄거리’라고 보여진다. 다만 이 용어가 활용된 구체적인 법조문을 검토할 때, ‘행위의 줄거리’, ‘사업의 줄거리’라는 표현은 어색하다. 차라리 ‘주요 내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용어의 뜻과도 부합하고, 법령상의 다양한 표현과도 일관되게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소년법 제 5 조 (송치서)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주요 내용)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주요 내용),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의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목표·방침·주요사업·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주요 내용)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상정보의 등록)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주요

◆ 개폐(改廢) → 개정(改正) 및 폐지(廢止)

내용)(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 개선(改悛)의 정(情)이 현저(顯著)한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개선(改悛)”이란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을 이르는 말이다.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그 뜻을 알기 쉽게 ‘뉘우침’ 정도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등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개폐(改廢) → 개정(改正) 및 폐지(廢止)

“개폐(改廢)”의 사전적 의미는 ‘고치거나 없애 버림’이다. 이는 ‘개정과 폐지’를 합한 표현인데, 일상용어인 ‘개폐(開閉)’와 혼동될 염려가

있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용어를 축약하여 법문에 사용함으로써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 풀어 쓰도록 한다는 축약된 용어 사용금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이는 ‘개정 또는(및) 폐지’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설치)

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후의 법령개폐(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갱신(更新) → 연장(延長), 변경(變更), 다시 시작

“갱신(更新)”은 사전적 의미에서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이라는 의미이고 법률적으로는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갱신(更新)” 또한 ‘새롭게 고침’ 또는 ‘기간 연장’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먼저 “구속기간의 갱신”(제92조, 제105조)에서의 갱신은 구속의 ‘기간 연장’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공판절차의 갱신”(제105조, 제301조)이라고

◆ 갱신(更新) → 연장(延長), 변경(變更), 다시 시작

할 때의 갱신은 ‘다시 시작함’을 의미하고, “갱신 결정”(제408조)에서의 갱신은 ‘변경’을 의미한다. 구속기간의 갱신에 있어서는 “갱신”은 ‘연장’으로 바꾸어도 용어의 사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본문 이외에 제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판절차의 갱신에 있어서 “갱신”은 본문에서는 ‘다시 시작’이라고 바꾸어도 무방하지만 제호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어색하다. 따라서 이 경우 제호에서는 “갱신”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 결정)의 경우에는 제호의 “갱신”은 ‘변경’으로 바꾸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바꾸는 경우 본문의 “경정” 또한 ‘변경’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용어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적절하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연장))

-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연장)할 수 있다.
- ② 갱신(→연장)한 기간도 2월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연장),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변경) 결정)

①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변경)하여야 한다.

◆ 격리(隔離) → 떼어놓음

“격리(隔離)”는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 놓음’이라는 뜻이다.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떼어놓음’으로 바꾸어야 이해하기 쉽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떼어놓음’이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8조 (구분·격리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구분하거나 떼어놓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법 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떼어놓거나)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과(經過) → 과정(過程), 지남

“경과(經過)”는 일반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와 ‘시간이 지나감’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형사소송법 이외의 청소년 관련법령상 “경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감의 임무)에서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외에는 모두 후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양자는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체할 쉬운 표현이 있고, 한글뿐 아니라 한자의 표기도 같아서 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순화를 필요로 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전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후자의 경우를 ‘지남’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로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 즉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의 “경과”는 쉬운 표현인 ‘과정(過程)’으로 순화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9 조 (교육감의 임무)

- ③ 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 및 관련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과정)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소년법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의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65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지나지) 아니한 자

◆ 경미(輕微) → 가벼움, 사소함

“경미(輕微)”는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이다. 아주 어려운 한자말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벼움’ 또는 ‘사소함’ 등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은 ‘가벼움’ 또는 ‘대수롭지 않음’이라는 순화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년법 제19조 (심리불개시의 결정)

- ② 사안이 경미하다는(→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요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미한(→사소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소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8조 (경미한(→사소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소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만 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하여야 한다.

◆ 경유(經由) → 거침

“경유(經由)”는 물리적으로 ‘어떤 곳을 거쳐 지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사무절차 등의 관념적 의미에서는 ‘어떤 부서를 거쳐 지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상 “경유”는 예외 없이 후

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쉬운 우리말인 ‘거침’으로 순화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도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용어의 순화·정비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을 제정하여 순화·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입법·사법·행정 각 부처에 검토의뢰하여 그로부터 정비의견을 받은 후, 이를 다시 국어학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제처 내에 설치한 ‘법령용어심의회’에서 확정하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법령용어순화편람’⁷⁾(이하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이라 함)을 펴내고 있는데, 이 법령용어순화편람도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② 전항의 신청은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거쳐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9조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②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63조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거쳐야) 한다.

7) 법령용어순화편람(제6집), 법제처, 1996.

◆ 경정(更正) → 변경(變更)

“경정(更正)”은 사전적으로 ‘바르게 고침’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상의 쓰임을 보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및 ‘재판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결정 또는 재판서를 알맞은 내용으로 고치거나 변경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뿐 그 자체가 전문법률용어로 사용되어야 할 만큼의 함축성을 가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굳이 어려운 한자어인 “경정”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변경(變更)’이라는 표현을,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고침’이라는 표현을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특히 ‘경정결정을 하다’라는 표현을 ‘바로잡다’라고 순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상으로는 같은 뜻일지 모르나 “경정결정”이라는 정형화된 법률상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경정”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두기도 하고(제260조, 제446조) 한자를 함께 쓰기도 하는 등(제94조, 제211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정결정”이라는 용어의 조어력(造語力)을 고려할 때 ‘변경’이라는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 제408조 제호의 “갱신결정”이라는 표현 또한 ‘변경결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변경)결정)

- ①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변경)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 ①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경정(→변경)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변경)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경정(→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중(輕重) → 가볍고 무거움

“경중(輕重)”이란 죄의 중요함과 중요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이며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또한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이외에는 죄질과 범정(犯情)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경중(輕重)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가볍고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후 새로 검토하겠지만 관련표현인 ‘경(輕)한’, ‘중(重)한’도 각각 ‘가벼운’, ‘무거운’으로 고쳐 쓰는 것이 순화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가볍고 무거움)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① 형의 경중(→가볍고 무거움)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가볍고 무거움)을 정한다.

행형법 제46조 (징벌)

-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가볍고 무거움),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 달성을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경질(更迭) → 바뀜

“경질(更迭)”은 사전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이라는 의미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갈림’이라는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에서의 쓰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단순히 ‘바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와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종전의 “경질”을 ‘바뀜’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제204조).

형사소송법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판사가 바뀐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경(輕)한 → 가벼운

“경(輕)하다”는 사전적으로 ‘① 무게가 가볍다, ② 언행이 경솔하다, ③ 가치나 비중 따위가 적다, ④ 병세나 죄과, 형벌 따위가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 등의 의미이다. 일상용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식 표현이므로 단순히 ‘가볍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형법 제 1 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계구(戒具) → 보호기구

“계구(戒具)”란 수용자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구의 종류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가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는 계구를 ‘보호기구’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행형법 제14조 (계구(→보호기구))

-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보호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계구(→보호기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포승
 - 2. 수갑
 - 3. 사슬
 - 4. 안면 보호구
- ③ 계구(→보호기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계구(→보호기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보호기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 시행령 제45조 (계구(→보호기구)의 사용)

계구(→보호기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도(啓導) → 지도(指導)

“계도(啓導)”는 사전적으로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이라는 뜻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일깨움’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및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은 ‘일깨우다’, ‘지도하다’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법령용어에서

“계도”가 주로 “계도문(啓導文)”의 형태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깨움’ 보다는 ‘지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범죄방지 계도(→지도))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지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지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지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계도문(→지도문)의 작성 등)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지도문)(이하 “계도문(→지도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성범죄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신상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계도문(→지도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 등에 대상청소년 또는 피해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리(計理) → 계산(計算)

“계리(計理)”는 사전적으로 ‘계산하여 정리함’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알기 어려운 한자말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이 용어를 ‘경리’로 고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사용례로서 기업예산회계법⁸⁾, 보훈기금법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용례들을 재검토했을 때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등을 검토해 보더라도 ‘계리’는 ‘계산’으로 고쳐 쓰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동시에 전달하고자 했던 바를 표현하는 점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계산)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기금의 관리·운용)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계산)한다.

◆ 계속(係屬) → 한자 함께 씀

“계속(係屬)”은 민사소송법적으로는 ‘소(訴)의 제기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특정 사건이 판결 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를,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형사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8)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 (계리의 원칙)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를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계속(繫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전 문법률용어로서 이를 대체할 용어가 적당치 않다. 따라서 이 용어는 현행대로 사용하도록 하되, 무엇인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의미의 ‘계속(繼續)’과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자를 함께 써 주면 좋을 것으로 본다.

소년심판규칙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계속(係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참고]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 ③ 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계호 → 경계감호, 경계보호, 보호

“계호(戒護)”의 사전적 의미는 ‘경계하여 지킴’이다. 일상용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이해하기 쉽게 ‘경계감호’, ‘경계보호’, ‘보호’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형법 시행령 제18조 (목욕)

- ② 여자인 신입자가 목욕하는 경우에 그의 계호(→경계보호)를 위한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행형법 시행령 제41조 (장애물의 금지)

교도소등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게 하거나 기타 제호(→경계보호) 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 고수부지(高水敷地) → 둔치

“고수부지(高水敷地)”는 ‘큰물이 날 때만 물에 잠기는 하천 언저리의 터’를 의미한다. 이 용어도 일본어식 법률용어의 하나이다. 최근 언론 등에 의하여 자주 사용되어 일상성을 획득하여 가고 있는 순우리말 ‘둔치로 순화하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둔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 고지(告知) → 알림, 통지(通知)

“고지(告知)”는 사전적으로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이라는 의미이다.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송법적으로 ‘법원이 결정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맞게 법원의 판결·결정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검사가 피의자·피고인, 고소·고발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말함’(제72조, 제201조의2), ‘알림’(제87조, 제88조, 제200조), ‘통지’(제258조), ‘설명’(제259조)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청소년 관련법령에 있어서도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년

법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판결·결정 또는 명령이 아닌 증거거부권의 존재를 알려주는 경우에도 본문에서는 “알려야”라고 하면서 제호에서는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제10조), 소년심판규칙은 법원의 결정을 알리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통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용어사용의 혼란은 “고지”라는 용어가 법원이 판결·결정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전문법률 용어라고 하여야 할 당위성의 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좀 더 쉽고 일상적인 용어로 순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및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권장사용’ 의견)은 모두 이를 ‘알림’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년법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이미 본문에서 ‘알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나머지도 이와 같이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호에서 또는 한자어와 나란히 사용되는 경우 ‘알림’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알린다’는 의미의 함축적 조어가 필요한데, 어떠한 용어가 적절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지”와 “통지”가 섞여 쓰이고 있으며, 소년심판규칙은 제3조에서 “고지”와 “통지”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나누어 사용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고지”는 원칙적으로 ‘알림’으로 바꾸되, 소년법 제10조나 소년심판규칙 제9조와 같이 축약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지(通知)’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소년법 제10조 (진술거부권의 고지(→통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 3 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통지))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알려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 9 조 (비행사실등의 고지(→통지))

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년의 비행사실
2.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기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보호자는 조사,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 고(告)하다 → 알리다

“고(告)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말하다’ 또는 ‘중요한 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알리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일본어의 ‘告する’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일본어식 표현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알리다’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및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또한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 공술(供述) → 진술(陳述)

“공술(供述)”이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증인·감정인이 해당 관련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법원에 알리는 일’을 의미한다. 일본어식 표현으로서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및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은 이를 ‘진술’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95년 개정전 형법은 제152조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허위의 “공술”을 규정하였으나 개정하여 공술 대신에 “진술”이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에서 나머지 조문들 역시 ‘진술(陳述)’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안(公安) → 공공(公共)의 안녕(安寧)과 질서(秩序)

“공안(公安)”은 사전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공안을 ‘공공안녕’으

로 순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형법 제119조 등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검토해 볼 때, 공안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로 고치는 것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

-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여(供與) → 줌

“공여(供與)”는 ‘어떤 물건이나 이익 따위를 상대방에게 돌아가도록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은 ‘제공하다’와 병행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다’, ‘주다’, ‘바치다’ 등으로 고칠 것을 제안해오고 있다. 이러한 순화안 모두를 사용된 문맥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는 표제에서 이미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축약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공’으로, 본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줌’이라는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주게) 하거나 공여를(→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보조인)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주게) 하거나 공여하게(→주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공연(公然)”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일본어의 ‘公然と’라는 표현을 직역한 것으로서, 형사법에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경범죄 등에 있어서 그 행위태양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용어의 뜻을 풀어써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라고 하는 것은 언어경제에 반하며, 함축적 표현을 요구하는 법령용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공연히’는 ‘공공연하게’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인들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서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제(控除) → 뺐

“공제(控除)”는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뺐’을 의미한다. 공제(控除)는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뺐’이나 ‘뺨’ 등 더욱 쉽고 간결한 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은 ‘뺨’으로 고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뺨’, ‘뺐’이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뺐’보다는 ‘뺨’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처럼 ‘금액’ 등 돈과 관련된 표현에서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보험가입)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뺨) 금액

◆ 공중(公衆) → 사람들

“공중(公衆)”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공중은 ‘こうしゅう’로 일본어식 법령용어에 속한다.⁹⁾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은 ‘일반인’으로 고칠 것을 권장하였고,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은 ‘(일반)사람들’, ‘일반인’으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순화안 중에서도 가능하면 한자말보다는 한글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특히 청소년들의 쉬운 이해를 돕는데 좋다고 본다. 따라서 공중(公衆)은 ‘사람들’로 고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0조 (광고선전 제한)

2. 공중(→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사람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7조 (시정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

9) 박영도, 앞의 책, 46면 ‘공중’ 참조.

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공중(→사람들)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공표(公表) → 공개발표(公開發表)

“공표(公表)”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공표는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 그 자체로서 ‘공개 발표’라는 표현의 줄임말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공개발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공(供)하다 → 사용되다

공하다(供-)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 일본어의 ‘供する’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바치다’, ‘올리다’, ‘내놓다’, ‘도움이 되게 하다’ 등의 의미이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 2003년 정비편람에서 이를 ‘제공하다, 바치다, 주다, 사용하다’ 등으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바지할 공(供)의 의미를 살려서 ‘사용되다’ 정도로 고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95조 (시설제공이적)

-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군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①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사용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과(課)하다 → 부과(附課)하다

“과(課)하다”는 ‘課する’라는 일본어 표현에서 온 것이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는 ‘내리다’, ‘주다’, ‘부과하다’ 등으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부과(附課)하다’라는 말도 풀어 쓰면 ‘매김’, ‘매기다’, ‘부담시키다’ 등의 말로 고쳐 쓸 수 있겠지만, 법령상 ‘과하다’라는 표현이 주로 일정한 형벌(刑罰)을 부과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과하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아동복지법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부과)한다.

청소년기본법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부과)한다.

행형법 제35조 (작업)

①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부과)한다.

◆ 관람(觀覽) → 구경

“관람(觀覽)”은 ‘연극, 영화, 운동 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이라는 의미이다. 일상적으로도 영화를 관람하다, 공연을 관람하다 등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굳이 관람(觀覽)이라는 한자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구경’이라고 바꾸었을 때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 관람(→구경)시키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구경)시키는 행위

◆ 교부하다(交付-) → (내어) 주다

“교부(交付)”는 사전적으로 ‘내어 줌’이라는 의미이고, 법률적으로는 ‘물건을 인도하는 일’을 말한다. 양자 모두 무엇인가를 ‘내준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같다. 일반용어로서의 의미와 법률용어로서의 의미가 특별히 다르지 않고, “교부”라는 표현만이 가지는 특별한 개념요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순화안으로 ‘내주다’ 또는 ‘넘겨받다’를 제시하고 있고,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도 ‘내(어) 주다’라는 표현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령상의 “교부”는 소년원법 제22조(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등 구체적인 조문에서의 사용례를 검토해 볼 때 ‘내주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제호 등에서 축약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내줌’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자연스

러울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할 적합한 용어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교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소년원법 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 ①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소년 등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내주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7 조 (수련시설의 등록)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내주어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교정(矯正) → 바로잡음

보통 교정이라고 하면 원고의 오탈자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동음이의어 ‘교정(校正)’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에서 주로 쓰이는 교정은 “교정(矯正)”으로, 그 의미는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또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2003년 정비편람에서 ‘교정하다’를 ‘바로잡다’로 고쳐 쓰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용어가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주로 비행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의 ‘(성품과 행실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용어가 사용된 문맥에 어울리게 ‘바로잡다’, ‘성품과 행실을 바로잡다’ 정도로 적절하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년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성행을 바로잡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 9 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성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구두(口頭) → 말

“구두(口頭)”는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이거나 ‘구두로’ 꼴로 쓰이는데 ‘마주 대하여 입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및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는 ‘구두로’를 ‘구술로’ 혹은 ‘말로’라고 고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쉬운 우리말인 ‘말’로 바꾸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신고방법)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서면이나 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

게 구두(→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구술(口述) → 말

“구술(口述)”은 사전적으로 ‘(입으로) 말함’이라는 의미이다.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은 ‘말로 진술’을,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이를 ‘말로 함’을,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말로 진술’ 또는 ‘말로 함’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를 모두 ‘말로’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제89조, 제161조, 제266조 등).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에서 청소년관련 법령용어 또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소년심판규칙 제 6 조 (통고의 방식 등)

-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말)로 할 수 있다.
- ③ 구술의(→말에 의한)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② 과태료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구(求)하다 → 요구하다, 듣다

“구(求)하다”는 ‘필요한 것을 찾거나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 또는 ‘상대적이 어떻게 하여 주기를 청하다’ 등의 의미이다. 이 용어에 대해 법제처 정비편람에서는 순화방안을 직접적으로는 내놓고 있지 않으나, 이는 ‘求する’라는 일본어에서 온 표현으로서 적절한 우리말로 의 순화가 필요하다. 문맥에서 사용된 의미에 적절하게 ‘요구하다’, ‘듣다’ 등을 활용하여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의2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등의 통보 등)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상담가, 의사, 변호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들어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7조 (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요구할) 수 있다.

◆ 궁박(窮迫) → 매우 어려운

“궁박(窮迫)”에 대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몹시 가난하여 구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구차’하다는 말은 ‘살림이 몹시 가난함’,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 설명은 같은 의미를 중복하고 있는 잘못이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궁박한’을 ‘몹시 곤궁한’이나 ‘매우 어려운’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용어가 사용된 형법 제349조를 참고로 보면, 사람이 궁박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려운(가난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정신·명예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에 중심을 둔 ‘매우 곤궁한’이라는 표현보다는 ‘매우 어려운’이라고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 ① 사람의 궁박한(→매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립(起立) → 일어섬

“기립(起立)”은 ‘일어나서 섬’을 한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말 ‘일어서다’로 바꾸면 충분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도 같은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선서의 방식)

- ④ 선서는 기립하여(→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 기망(欺罔) → 속임(수)

“기망(欺罔)”은 ‘속이다’라는 뜻으로서 ‘기만(欺瞞)’과 같은 의미이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은 헌법, 법률 13건, 시행령 1건, 시행규칙 1건 등 16건에 불과하고, 각 법령 내에서의 사용빈도 또한 헌법 1개 조문, 형법 2개 조문, 형사소송법 1개 조문 등으로 매우 낮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기망”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전문법률용어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이 단어가 일상용어인 ‘속이다’라는 의미 외에 다른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쉬운 일상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이에 대해 한자를 함께 쓰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글이나 한자나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쉬운 우리말인 ‘속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기망”은 일정한 행위태양을 의미하므로 ‘속임’보다는 ‘속임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속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산(起算) → 계산을 시작

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속임수)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기산(起算) → 계산을 시작

“기산(起算)”이란 ‘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그 의미를 명확하고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산을 시작하다’를 문맥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고소기간의 계산을 시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소기간)

①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계산을 시작)한다.

청소년기본법 부칙 <제7162호,2004.2.9>

제 6 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직원은 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계산을 시작)한다.

◆ 기일(期日) → 날짜

“기일(期日)”이라는 표현은 ‘정해진 날짜’를 의미한다. 법령상에서는 주로 ‘심리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표현으로 법원, 당사자 그 외의 소송관계인이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정한 날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특히 ‘공판기일’을 ‘공판날짜’라고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공판날짜’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로 할 때 기일은 ‘날짜’라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79조(퇴원증 또는 가퇴원증의 교부 등)에서는 “신고기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는 ‘신고기간’과 같은 의미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 제13조 (소환, 동행영장)

- ①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일을(→날짜를) 지정하여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법 제21조 (심리기일의 지정)

-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심리날짜를)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 3 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심리기일에(→심리날짜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3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공판날짜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79조 (퇴원증 또는 가퇴원증의 교부 등)

- ② 소년원장은 가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신고기일(→신고기간) 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기재(記載) → 적음

“기재(記載)”는 사전적으로 ‘문서 따위에 기록하여 올림’이라는 의미이다.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일뿐더러, 법률용어로서의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갖는 용어도 아니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적다’, ‘적어 넣다’, ‘쓰다’, ‘써넣다’ 등의 용어를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적다’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 다만, 축약명사형으로 사용할 때는 ‘적음’으로 하는 것은 어색하므로 현재대로 “기재”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 5 조 (송치서)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적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의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적고) 소년부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27조 (사고발생보고)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장소·내용·조치사항 등이 기재된(→적힌)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基)하다 → 터잡다

“기(基)하다”는 말은 ‘근거하다’ 또는 ‘입각하다’는 의미의 일본어 ‘基づく’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문에 나타나는 “기(基)하여”는 “基づいて”를 직역한 말로 한자어로는 ‘근거하여’, ‘입각하여’, ‘의하여’ 등으로, 순우리말로 ‘따라’, ‘터잡아’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과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모두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순화된 용어만 사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다르다.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은 ‘터잡아’를, 법제처 1996년 순화편

◆ 기한(期限) → 마감, 마감 날짜, 마감 날

람은 ‘의하여’, ‘따라’, ‘바탕으로 하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근거하다’ 또는 ‘터잡다’가 용어의 뜻을 정확히 고려하는 순화방향이라고 보여지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말 ‘터잡아’가 더욱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⑦ 지방법원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터잡아)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기한(期限) → 마감, 마감 날짜, 마감 날

기한(期限)은 사전적으로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를 뜻하며, ‘마감’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한’은 주로 ‘마감 날짜’를 의미한다. 따라서 ‘마감’, ‘마감 날짜’, ‘마감 날’ 등으로 문맥에 어울리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제어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간결하게 ‘마감’으로, 조문 안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마감 날짜’, ‘마감 날’이라고 하여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과징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마감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징금납부마감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 ①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과징금납부 마감 날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其他) → 그 밖에, 그 밖의

“기타(其他)”는 한자를 풀어 쓰면 ‘그 밖의 또 다른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이 있으면 그렇게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국립국어연구원이 제정한 ‘법령안 문장 순화 작업의 세부 지침’(아래에서는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이라 함)은 모두 ‘그 밖의(에)’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전면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수용하고 있다. 법령용어의 순화 및 통일화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같이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의 “기타”의 쓰임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한 후 그 이외의 것들을 총칭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그 밖의(에)’보다는 오히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등(等)’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가지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어울리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그 밖의’와 ‘그 밖에’의 쓰임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에 나열된 내용이 그 밖의 것을 예시하는 것인 경우, 즉 앞의 것이 뒤의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를 사용하고, 앞에 나열된 내

◆ 긴급(급속)을 요하는 경우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이 뒤의 것과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밖에’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 제 5 조 (송치서)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제 3 조 (관장 및 조직)

②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 기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년원법 제12조 (이송)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기타(→그 밖의) 이유로써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긴급(급속)을 요하는 경우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급속(急速)을 요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일본형사소송법상의 ‘急速を要する場合’이라는 표현을 직역한 것이다(제69조, 제70조, 제92조,

제127조 등 참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표현도 “급속”을 “긴급”으로 바꾸었을 뿐 같은 구조의 말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말의 쓰임에 맞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년심판규칙 제18조 (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후의 처리등)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2조 (동행영장의 집행)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날인(捺印) → 도장을 찍음

형사소송법상 “날인(捺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날인”은 ‘도장을 찍음’이라는 의미인데,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말도 아니고 한자도 어려운 한자여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도장을 찍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날인”이라는 용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명날인(署名捺印)”, “기명날인(記名捺印)”, “연명날인(連名捺印)” 등 일련의 행위를 한데 묶어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명(署名)”은 ‘자기의 이름을 써 넣음’이라는 뜻이고 “기명(記名)”은 ‘이름을 적음’이라는 뜻이다. 양자는 모두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지만, “서명”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때 이를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등으로 풀어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일단 한글로 쓰게 되면 한자어 “서명”과 “기명”이 갖는 강렬한 대비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조문에 따라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한글로 풀어쓰면 언어사용의 경제성에 어긋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1조 제2항의 경우 이를 한글화하면 ‘재판장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다른 법관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은 나름대로 법률용어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한 용어로서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대신 형사소송법상 단 한 번 사용되고 있는 “연명날인”이나(제32조 제1항),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 “날인”(제313조, 제461조)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및 ‘도장을 찍음’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년법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의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서명·날인(→현재대로)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 6 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소년심판규칙 제 2 조 (결정서)

- ① 소년부판사가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현재대로)을 기명날인(→현재대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3 조 (청소년증의 발급·교부)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증 신청접수·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 하여야(→찍어야) 한다.

◆ 납부(納付) → 냄

“납부(納付)”는 사전적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용어이지만, 법률용어 순화의 관점에서 같은 뜻을 표현하는 우리말 ‘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또한 이러한 취지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제호 등과 같이 축약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냄’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납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관련표현인 ‘분할 납부’는 ‘나누어 내다’를 활용하여 순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기본법 제62조 (수수료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과징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1조 (과태료)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낭독(朗讀) → 읽음

“낭독(朗讀)”은 ‘글을 소리내어 읽음’이라는 의미이다.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은 이를 ‘소리내어 읽음’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단순히 ‘읽음’으로 고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읽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

고 있다(제146조, 제191조 등). 형사소송 관련법령에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조문이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는 제3항에서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라고 규정하여 ‘읽어 준다’는 표현을,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는 제2항에서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읽어서 들려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형사소송 규칙 제35조(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또한 제호에서는 “낭독”이라고 하면서 본문에서는 ‘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낭독”은 사전적으로 ‘소리내어 읽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만, 형사소송 관련법령상 “낭독”은 모두 소리내어 읽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로서 굳이 ‘소리내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의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 등을 고려할 때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와 같이 축약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읽음’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낭독)

형사소송법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공판조서를 읽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내(內) → 안

“내(內)”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으로서나 시간적 기간의 개념으로서나 모두 ‘안’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고 어감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우리말인 ‘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이 이와 관련하여 ‘내벽(內壁)’은 ‘안벽’으로, ‘내측(內側)’은 ‘안쪽’ 등으로 고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소년원법 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 ② 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시설 내(→안)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소년 등을 일시 적당한 장소에 긴급 이송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15조 (위탁소년의 출석)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가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행하는 소년원(이하 “소년분류심사원”이라 한다)인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청사 내(→안)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청소년 건강·체력기준의 설정·보급)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매 5년의 범위내(→안)에서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내지(乃至) → 부터, 또는

내지(乃至)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거나 ‘또는’의 동의어로 쓰인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에서는 ‘내지’는 ‘-부터 -까지의 규정’으로 순화하되, 이 용어가 조문의 중간에 위치하거나 문맥상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터 -까지’라고 표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년원법 제29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살펴보면 ‘부터’ 혹은 ‘또는’이라고만 바꾸어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즉 굳이 ‘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 전자의 의미로 쓰였는지 후자의 의미로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부터’나 ‘또는’ 중에서 문맥에 맞게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원법 제29조 (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년원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부터) 제5호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부터)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7조 (응급조치의무 등)

- ②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녹음대(錄音帶) → 녹음테이프

“녹음대(錄音帶)”는 국어사전에 실려있지 않은 단어이다. 풀어 쓰면 ‘소리(音)를 기록하는 띠(帶)’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곧 ‘녹음테이프’를 의미하는 말이다. ‘테이프’는 외래어지만 이미 우리말로 정착되어 있고, 이를 대체할 용어도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대로 ‘녹음테이프’라고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 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녹음테이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

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9조 (녹음대(→녹음테이프)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 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녹음테이프)를 폐기한다.

◆ 녹취(錄取) → 녹음(錄音)

“녹취(錄取)”는 사전적으로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이라는 뜻을 갖는다. 즉 일정한 음향을 ‘녹음(錄音)’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는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제56조의2 제1항)에 의해 명백해진다. 따라서 이는 쉽고 일상적인 ‘녹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의 견해도 같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녹음))

①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 of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녹음)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녹음)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녹음을)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속기나 녹취(→녹음)의 신청)

- ① 속기나 녹취(→녹음)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녹음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7조 (녹취(→녹음))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녹음)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8조 (녹취서(→녹음서)의 작성등)

- ① 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녹음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녹음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한다.
 - 1. 녹취서(→녹음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2. 녹취서(→녹음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녹음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농아자(聾啞者) → 듣고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한자의 음과 훈으로 볼 때 ‘농(聾)’은 ‘귀먹을 농’ ‘아(啞)’는 ‘병어리 아’이다. 따라서 “농아자”는 ‘귀머거리인 동시에 병어리인 사람’을 말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농자(聾者)’를 ‘듣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아자(啞者)’는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아자(聾啞者)’는 ‘듣고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81조의 경우에는 제호에서는 “농아자”라고 하면서 본문에서는 “농자 또는 아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의 통역을 위한 조문임을 고려할 때 본문의 표현대로 선택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형법상 책임능력 감경사유인 제11조(농아자)와 관련하여 농아자라 하여 모두 사물변별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 등과의 관계에 있어 형평의 문제가 있으며, 우리 형법이 본받았던 일본형법의 같은 규정도 1995년 형법개정시 삭제되었고,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삭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81조의 농아자에 대한 특별규정은 소송절차상의 편의도모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제33조의 경우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필요적 국선변호 범위의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누설(漏泄) → (다른 사람이) 알게 하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듣고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형사소송법 제181조 (농아자(→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누설(漏泄) → (다른 사람이) 알게 하다

“누설(漏泄)”은 사전적으로 ‘기체나 액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감. 또는 그렇게 함’ 또는 ‘비밀이 새어 나감. 또는 그렇게 함’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및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 등에서는 ‘누설하다’를 ‘새다, 흘리다’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법령용어에서 사용되는 “누설”은 대부분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알게 함’ 정도로 바꾸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기본법 제32조 (자료의 요청 등)

- ②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아동복지법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다.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청소년 또는 대상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② 제29조 및 제30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단행(但行) → 단서(但書)

“단행(但行)”은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는 단어로서, 형사소송법에서는 ‘단서(但書)’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쉬운 표현인 ‘단서’라고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 ② 전항 단행(→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7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단서)의 규정에 의한 판결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당부(當否) → 옳고 그름

“당부(當否)”는 ‘옳고 그름, 마땅함과 그렇지 않음, 적당함과 부적당함’ 등의 의미를 갖는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쉬운 우리말로 ‘옳고 그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 ①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당해(當該) → 그, 해당(該當)

“당해(當該)”는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문투의 구시대적 용어로서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그’라는 표현으로,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해당(該當)’이라는 표현으로, 국립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은 양자 중 어느 하나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그’라는 표현(제44조, 제167조, 제306조)과 ‘해당’이라는 표현(제177조, 제356조)을 문맥에 따라 섞어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법령상의 “당해”도 문맥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 조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 ② 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

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9조 (등급구분 등)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해당)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 (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②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달성(達成) → 이룸

“달성(達成)”은 ‘목적한 것을 이룸’을 의미한다. 어려운 한자말은 아니지만 한글로도 얼마든지 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말 ‘이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소년원법 제41조 (교육계획)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등을 참작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6. 그 밖에 단체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동복지법 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 대여(貸與) → 빌려 줌

대여(貸與)는 ‘빌려 줌’을 의미한다. 크게 어려운 한자말은 아니지만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이 용어는 ‘빌려주다’라는 쉬운 표현으로도 그 뜻을 전달하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도 ‘빌려주다’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빌려줄) 수 있다.

소년원법 제17조 (급여품등)

- ①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한다(→주거나 빌려준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 (판매금지 등)

-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해당 매체물을 팔거나 빌려주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부(貸付) → 빌려 줌

“대부(貸付)”는 ‘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 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꾸어 줌’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끼기’, ‘돈 끼기’, ‘빌림’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는 ‘빌려준다’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함과 동시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순화안 중에서는 ‘빌려준다’가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므로 그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기본법 제5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빌려주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대행(代行) → 대신(代身)

“대행(代行)”은 ‘남을 대신하여 행함’이라는 의미이다. 청소년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검토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검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그 직무를 “대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대신’한다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검토위원장)

- ② 검토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토위원장이 지명하는 검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대신)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6조 (소장 등)

- ③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대신)한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선서의 방식)

-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대신)한다.

◆ 도과(徒過) → 지남

“도과(徒過)”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단어로, 한자의 뜻을 풀어 쓰면 ‘헛되이 지나다’라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말로 쉬운 말로의 순화가 필요하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순화안으로 ‘지남’이라는 용어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넘김’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지남’, ‘지나감’, ‘경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쓰임을 고려할 때 ‘지남’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②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지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법 제3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도모(圖謀) → 피함

“도모(圖謀)”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이라는 뜻이다. 동의어에는 ‘피함’, ‘계략’ 등이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과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은 ‘도모’를 ‘피함’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굳이 ‘도모’라는 한자말을 쓰지 않더라도 ‘피함’이라는 순 한글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78조 (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보호소년 등의 근면성·책임감·협동성·자주성·정직성·예절성 그 밖에 심신과 행동발달을 도모하는데(→피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③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피하는) 사업

아동복지법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피하는) 행위를 한 때

◆ 도화(圖畵) → 그림

“도화(圖畵)”는 사전적으로 ‘도안과 그림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한자를 함께 쓰지 않고는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비일상적인 용어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은 이를 ‘그림도면’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도안’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림’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그림’으로 순화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8조 (물수의 대상과 추정)

- ③ 문서, 도화(→그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물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그림

형사소송법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그림이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 독립(獨立)하여 → 독립적으로

“독립(獨立)하여”는 일본형사소송법상의 ‘獨立して’를 직역한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쓰임에 어울리게 ‘독립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따로 떼어’라는 순화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쓰임에는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9조 (보조인)

- ③ 보조인은 독립하여(→독립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독립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 동거(同居) → 함께 삶

“동거(同居)”는 ‘한 집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삶’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같이 살다’를 병행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하나, 굳이 한자말로 나타내지 않아도 ‘함께 살다’ 등의 순 한글표현으로도 간결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더욱 쉽게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②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함께 사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 ④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함께 사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동일(同一)한 → 같은

“동일(同一)”은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음’이라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도 일상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쉽게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 표현 ‘같음’이 있으므로 그렇게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소년법 제66조 (가석방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같은)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25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 ② 동일(→같은)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등본(謄本) → 한자 함께 씀

“등본(謄本)”은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 또는 그런 서류’를 의미한다. 오랫동안 전문법률용어로 사용되어 오면서 앞의 사전적 의미에 ‘관공서에서 부여한 증명기능을 포함한 서류 또는 문서’라는 규범적 의미까지 획득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 법률용어표준화 기준은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본(等本) 등으로 오해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한자를 함께 표기하여 “등본(謄本)”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라는 의미의 “초본(抄本)”,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하는 “원본(原本)”, ‘원본의 훼손에 대비하여 예비로 보관하거나 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드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의미하는 “부분(副本)” 또한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년심판규칙 제 5 조 (통지의 방식)

-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등본(謄本))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로부터 → 부터

국어사전에 의하면 ‘-부터’라는 말은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로부터’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이에 따를 때 어떤 기간의 시작점으로서의 ‘날(日)’과 결합하는 표현으로는 ‘날로부터’와 ‘날부터’가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때’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때부터’가 정확한 표현이다. 형사소송법은 양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로부터’라 하고 어느 경우에는 ‘-부터’라고 하는 것도 불규칙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이 책에서는 “내지(乃至)”를 ‘-부터 -까지’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이러한 표현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로부터”는 ‘-부터’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52조 (소년부송치시의 신병처리)

- ①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때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판사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 잃는다.

소년원법 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 ② 원장은 사망한 보호소년 등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소년심판규칙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날부터) 시행한다.

◆ 만료(滿了) → 끝남

“만료(滿了)”는 ‘기한이 다 차서 끝남’이라는 의미이다. 쉬운 우리말 ‘끝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뜻의 변화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421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호처분)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검토위원의 임기)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검토위원이 질병·장기여행 등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 말일(末日) → 마지막 날

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처리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말소(抹消) → 지움

“말소(抹消)”는 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을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움’, ‘지워 없앴’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말소하 다를 ‘지워없애다’와 병행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쉬운 우리말 ‘지움’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지운) 자

◆ 말일(末日) → 마지막 날

“말일(末日)”은 한자어의 뜻 그대로 ‘어떤 시기나 기간의 맨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끝나는 날’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우리말 ‘마지막 날’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79조 (퇴원증 또는 가퇴원증의 교부 등)

- ①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매 월 말일(→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수수료실시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가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계도문의 작성 등)

- ②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관한 자료(이하 “성범죄자관련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마지막 날)과 8월 31일까지 성범죄자관련자료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종합하여 그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그 반기의 다음달 말일(→마지막 날)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매개(媒介) → 이어줌

“매개(媒介)”는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을 의미한다.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이어주다’ 등의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 제 2 조 (정의)

-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이어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이어주는) 행위

◆ 면전(面前) → 앞

“면전(面前)”은 사전적으로 ‘보고 있는 앞’을 의미한다.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인 ‘앞’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161조).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형사소송규칙 제130조 (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면전(→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76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 ② 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앞)에서 하여야 한다.

◆ 명료(明瞭) → 분명(分明)

“명료(明瞭)”는 ‘뚜렷하고 분명함’을 의미한다. 좀 더 쉽고 일상적인 용어인 ‘분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136조, 제140조, 제144조 등).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 명시(明示) → 밝힘

“명시(明示)”는 사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명시하다를 ‘밝히다’와 병행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명시” 자체로도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밝힘’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320조, 제345조, 제377조 등).

청소년보호법 제2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밝혀) 고시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제49조 (방문허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기타 사유로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가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

◆ 명시한 의사(明示한 意思) → 명시적 의사(明示的 意思)

29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 요구의 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밝힌) 서면으로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하거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 명시한 의사(明示한 意思) → 명시적 의사(明示的 意思)

“명시한 의사”는 일본형사소송법상의 ‘明示した意思’를 직역한 것으로서 우리말의 쓰임새로는 ‘명시적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고로 2006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는 제3항에서 “명시적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법령용어들도 이와 같이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조 (보조인)

③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명(命)하다 → 명령(命令)하다

“명(命)하다”는 표현은 ‘명령한다’는 뜻의 일본어 ‘命する’를 직역한 것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명(命)할 수 있다’를 ‘명령할 수 있다’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소년법 제11조 (조사명령)

- ①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명령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36조 (수거·파기)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명령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호처분)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감명령을 동시에 명할(→명령할) 수 있다.

◆ 모해(謀害) → 모함하여 해침

“모해(謀害)”는 ‘피를 써서 남을 해침’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말이다. 따라서 일반인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모함하여 해치다’, ‘해침’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의 정비안도 같은 내용이나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모함하여 해침)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모함하여 해침)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몰취(沒取) → 몰수(沒收)

“몰취(沒取)”는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몰수(沒收)”가 ‘형법상 부가형의 하나’라는 의미와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빼앗아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몰취” 또한 “몰수”에 포함되는 의미이고, 더욱이 ‘취(取)’라는 표현은 일본어식 표현으로 사용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몰취”를 “몰수”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단순히 ‘빼앗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

어 쓰자고 하고 있다. “몰수”나 “몰취”의 전문법률용어로서의 의미를 감안할 때 단순히 ‘빼앗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몰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②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몰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3조 (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몰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무상(無償)으로 → 대가 없이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해하기 쉽게 ‘대가 없이’ 정도로 바꿀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 묵인(默認) → 알고도 넘겨버림

밖의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대가 없이) 대여할 수 있다.

◆ 묵인(默認) → 알고도 넘겨버림

“묵인(默認)”은 ‘모르는 체하고 하려는 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슬며시 인정함’이라는 뜻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묵인하다를 ‘(알고도) 넘겨버리다’와 병행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알고도 넘겨버리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3 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종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알고도 넘겨버리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문란(紊亂) → 어지러움

“문란(紊亂)”은 ‘도덕, 질서, 규범 등이 어지러움’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2003년 정비편람은 이를 ‘어지러운’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침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어지럽힐)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행정법시행령 제91조 (자비부담음식물등의 공급)

① 소장은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지(→어지럽히지) 아니하도록 당해 교도소등의 직원회에서 경영하는 판매소에서 이를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 미약(微弱) → 부족함

“미약(微弱)”은 ‘미미하고 약하다’는 뜻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약함’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사용된 형법 제1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반출(搬出) → 내어 감

제21조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이는 ‘약함’ 보다는 오히려 ‘부족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법령상 이 용어는 ‘부족함’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부족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부족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반출(搬出) → 내어 감

“반출(搬出)”은 ‘운반하여 냄’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는 ‘실어내다’, ‘내어가다’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의견이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로 할 때 반출하다는 ‘내어가다’라는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록정보의 열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복사하거나 내어가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복사하거나 내어간) 자

◆ 반(反)하다 → 거스르다

“반(反)하다”는 ‘남의 의견이나 규정 따위를 거스르거나 어기다’를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과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은 ‘거스르다’, (…와) 달리, ‘어긋나다’로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이 용어는 ‘反する’라는 일본식 표현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3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 ⑥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거슬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거슬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거슬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제302조·제303조·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죄

◆ 반환(返還) → 돌려줌

“반환(返還)”의 사전적 의미는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 또는 ‘되돌아 감’이다. 한자말을 쓰지 않더라도 ‘되돌려 줌’이라는 한글 표현을 활용하여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되)돌려주다’, ‘되돌리다’ 등 정비된 용어만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축약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반환”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것) 명할 수 있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48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 ①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퇴원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등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돌려주어야) 한다.

◆ 발로(發露) → 드러남

“발로(發露)”는 사전적으로 ‘마음속의 것이 행동, 태도, 작품 따위에 겉으로 드러남’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사실이 발로 될 염려”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로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드러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발문(發問) → 질문(質問)

“발문(發問)”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풀어 쓰면 질문을 (발)한다는 의미이므로 일상적인 용어인 ‘질문(質問)’으로 변경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이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 ②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질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질문)을 요구할 수 있다.

◆ 발부(發付) → 발급(發給)

“발부(發付)”는 ‘상대방에게 증서나 영장 등을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발급(發給)과 동의어이다. 발급은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줌’을 뜻하는데, ‘카드 발급’, ‘주민 등록증 발급’, ‘경로 우대증 발급’ 등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발부(發付)라는 말은 특히 ‘영장’ 등을 내어주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일상용어로는 ‘발급’이 더욱 흔히 쓰인다. 따라서 발부는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친근한 표현인 ‘발급’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의 정비안도 같다.

소년법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발급)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발급)하여야 한다.

◆ 발(發)하다 → 내리다, 발급(發給)하다

“발(發)하다”는 ‘꽃 따위가 피다’, ‘(빛, 소리, 냄새, 열, 기운, 감정 따위가) 일어나다’,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펴서 알리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법령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펴서 알리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발하다를 ‘내다’, ‘보내다’, ‘시작하다’, ‘내리다’, ‘발송하다’, ‘발표하다’ 등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은 ‘발하다’는 ‘내다’, ‘보내다’, ‘시작하다’, ‘내리다’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법령에서의 사용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내리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동행영장 등 영장과 관련하여서는 영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발급’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 제13조 (소환, 동행영장)

- ②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영장을 발할(→발급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14조 (소환의 방법등)

-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과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할(→발급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시정명령의 종류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

령을 발하는(→내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발행 → 퍼냄

발행(發行)은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퍼냄’을 의미한다. 굳이 한자말인 발행(發行)이라고 하기 보다는 ‘퍼냄’이라는 한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병행사용),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는 ‘발행처’를 ‘퍼낸 데/곳’으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발행’과 관련된 표현들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 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퍼냄

제49조 (과징금)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 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퍼내었거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수입한 자로 한다.

→ 피내었거나

◆ 방임(放任) → (내)버려둠, 돌보지 않음

방임(放任)은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둠’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은 ‘방임하다’ 대신에 ‘(내)버려두다’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굳이 어려운 한자말인 ‘방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도, ‘(내)버려두다’, ‘돌보지 않다’ 등 우리말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기본법 제 7 조 (사회의 책임)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내버려두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내버려두는 것)을 말한다.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소홀히 하여 돌보지 않는 행위)

◆ 배포(配布) → 나누어 줌

“배포(配布)”는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줌’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는 이를 ‘나누어 주다’라고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포’라는 한자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누어 주다’라는 쉬운 한글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 (판매금지등)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누어 주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 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나누어주어야) 한다.

제3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나누어줄) 수 있다.

◆ 번잡(煩雜) → 복잡(複雜)

“번잡(煩雜)”은 사전적으로 ‘번거롭게 뒤섞여 어수선했음’이라는 의미이다.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혼잡함’, ‘번거로움’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의 쓰임을 고려할 때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이를 ‘복잡(複雜)’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6조 (판결선고 기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 복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범정(犯情) → 범죄의 정황

“범정(犯情)”은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情況)’을 뜻한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에 관한 조항 외에는 찾아보기 드문 말이다. 물론 일상용어로도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일반인 및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범행정상’의 권장사용을 제안한 바 있고,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은 내용의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상(情狀)보다는 ‘정황’이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므로 ‘범죄의 정황’ 정도로 풀어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범죄의 정황)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 범(犯)하다 → 저지르다

“범(犯)하다”는 ‘법률, 도덕, 규칙 따위를 어기다’, ‘잘못을 저지르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 지역 등을 넘어 들어가다’, ‘권리나 인격 등을 해치거나 떨어뜨리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형사법에서는 주로 ‘잘못을 저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서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고쳐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범하다를 ‘저지르다’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

- ①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저지른)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저지른)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갹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변개(變改) → 고침

변개(變改)는 사전적으로 무엇인가를 ‘변경(變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본 형사법령에서 변개라는 용어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

성등)와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양 조문은 모두 ‘변개’를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이를 ‘바꿈’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고침’으로 표기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다르게 고침’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권장사용’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꿈’과 ‘고침’은 넓게 보아 유사한 의미이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변개’가 이미 성립된 공문서 등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고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고치지) 못한다.

◆ 변별(辨別) → 분별(分別)

“변별(辨別)”은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림’, ‘세상에 대한 경험이나 식견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판단’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에는 분별(分別)이 있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변별/하다’를 ‘가림(옳고 그름, 착함과 악함을) 분별하다’라고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은 이 용어를 ‘가리다’, ‘구별하다’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각건대 ‘구별’보다는 비슷한 말인 ‘분별(分別)’로 바꾸는 것이 좋고, 이보다는 순 한글로 ‘가리다’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좋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별단(別段)의 → 특별(特別)한

“별단(別段)”은 국어사전에 단순히 ‘별반(別般)’이라는 의미만이 실려 있는 단어이다. 여기서 ‘별반’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통과 다름’,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따로 별다르게’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별반 다르지 않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특별히’라는 의미를 갖는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다른’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용

어순화편람은 ‘다른’ 또는 ‘특별한’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정비된 용어만 사용’ 의견을 내고 있다. 제333조의 쓰임상 양자 모두 무난하다고 생각되나, 굳이 선택하자면 ‘특별한’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 ③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특별한)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별도(別途)의 → 딴, 다른, 특별한, 달리 정한

“별도(別途)”는 사전적으로 ‘원래의 것에 덧붙여서 추가한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다른’, ‘특별한’, ‘달리 정한’ 등을 대체로 의미한다. 이 가운데 해당 문맥에 맞게 선택하여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 ‘별도로’를 ‘따로’로 정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 8 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 ④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달리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6 조 (등급구분의 종류·방법)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

◆ 보정(補正) → 보완(補完)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달리 정한)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기금의 운용·관리)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다른)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보정(補正) → 보완(補完)

“보정(補正)”은 사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법률용어로는 ‘소장(訴狀)의 형식적 요인 따위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정정하고 보충하는 일’을 의미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바로잡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96조 및 제96조의7에서의 쓰임을 보면, 틀린 것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일정한 사항이 흠결되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동조에서의 “보정”은 ‘보완’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 (자료의 제출등)

④ 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7 (보정(→보완)의 요구)

관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신청 여부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 제201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한 서면이 없는 경우 또는 제9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고지가 없거나 그 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보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지(保持) → 지킴

“보지(保持)”는 사전적으로 ‘온전하게 잘 지켜 지탱해 나감’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116조(주의사항)에서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정도로 바꾸어 써도 무방할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지켜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복귀(復歸) → 되돌아감

“복귀(復歸)”는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복귀’를 ‘되돌아옴’이나 ‘다시 돌아옴’과 병행 사용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굳이 복귀(復歸)라는 한자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 의미대로 풀어서 ‘되돌아감’으로 고쳐 쓰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가정과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을) 지

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소년원법 제 5 조 (처우의 기본원칙)

- ①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심신발달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 있는 생활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가정과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부가(附加) → 덧붙임, 더함

“부가(附加)”는 사전적으로 ‘주된 것이 덧붙임’이라는 의미이다. 1995년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이를 ‘더함’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권장 사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덧붙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덧붙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152조, 제190조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는 볼 수 없고, 형사소송 관계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형사소송 관련법령상 사용되는 “부가”는 경우에 따라 ‘덧붙임’과 ‘더함’으로 선택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제99조(보석의 조건),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의 “부가”는 ‘덧붙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나, 형사소송규칙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의 “부가”는 ‘더함’으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99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덧붙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덧붙일)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 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더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더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더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 부기(附記) → 덧붙여 적음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附加)”는 ‘덧붙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부기(附記)”는 ‘덧붙여 적음’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

◆ 부대시설(附帶施設) → 딸린 시설

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나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렇게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역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152조, 제190조, 제211조 등).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41조 (재판서의 서명등)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② 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2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덧붙여 적어)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附帶施設) → 딸린 시설

“부대(附帶)”는 ‘(주로 명사 앞에 쓰여) 기본이 되는 것에 결달아 덧붙임’을 의미한다. ‘부대비용’, ‘부대시설’, ‘부대행사’ 등이 그러한 용어의 예이다. ‘딸린 시설’이라고 바꾸어 쓰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

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도 ‘딸린 시설’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마.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딸린 시설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부득이(不得已) → 어쩔 수 없음

“부득이(不得已)”는 사전적으로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라는 의미이다. 특별히 한자어로 써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부상(負傷) → 다칩

부상(負傷)은 ‘몸에 상처를 입음’, ‘몸을 다칩’을 의미한다. 한자말보다는 한글로 씀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다칩’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보험가입)

2. 부상의(→다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 부실(不實) → 거짓, 허위(虛僞)

“부실(不實)”은 국어사전에서 ‘몸, 마음, 행동 따위가 튼튼하지 못하고 약함’, ‘내용이 실속이 없고 충분하지 못함’, ‘믿음성이 적음’ 등을 뜻하는 말이다. 법령에서는 주로 ‘믿음성이 적다’는 의미 즉 ‘거짓’, ‘허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전2자와 비교하여 세 번째 의미로는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으므로 일반인과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실’은 해당 문맥에 적절하게 ‘거짓’, ‘허위’ 등을 선택하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

-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조(扶助) → 도움

“부조(扶助)”는 사전적으로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 또는 돈이나 물건’ 또는 ‘남을 거들어서 도와주는 일’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한자말이라고 여겨지므로 ‘도움’, ‘돕기’ 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형법 제39조 (작업수입 등)

- ③ 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가족의 생활을 돕거나)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129조 (영치금사용의 허가)

소장은 수용자가 그 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형제 또는 자매의 부조(→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형제 또는 자매를 돕거나) 기타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형법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지(敷地) → 터, 토지(土地)

“부지(敷地)”는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을 말한다. 부지는 不知(부지, 알지 못함), 不持(부지, 가지고 있지 아니함), 扶持(부지, 상당히 어렵게 보존하거나 유지하여 나감) 등 다양한 동음이의어를 가지는 말이다. 따라서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부지(敷地)는 ‘しきち’라는 일본어식 법령용어의 하나이다.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도 쉽지 않는 한자말이므로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바꾸어 쓰거나, 한결음 더 나아가서는 순 한글표현인 ‘터’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6 조 (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부지(→토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부(付)하다 → 부치다

“부(付)”의 음과 훈은 ‘줄 부’ 또는 ‘부칠 부’이다. 따라서 “부(付)하다”는 말은 ‘주다’ 또는 ‘부치다’의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부(付)하다”는 예외 없이 “심판에”라는 말과 호응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부(付)하다”는 ‘부치다’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어의 ‘付ける’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루빨리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역시 이를 ‘부치다’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참고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여러 곳에서 “부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282조, 제472조 등).

소년법 제20조 (심리개시의 결정)

- ② 제1항의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에 부하여질(→부쳐질) 사유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④ 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부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부쳐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상소권자)

②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부쳐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 부합(附合) → 맞음

“부합(符合)”은 사전적으로 ‘대(對)가 되는 물건을 서로 맞출 수 있게 만든 표’, ‘부신(符信)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문맥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여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쉽고 명확하게 뜻이 전달될 수 있으려면 ‘(들어)맞다’를 활용하여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부합(附合)되다/하다’를 ‘(들어)맞다’와 병행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맞도록) 하여야 한다.

◆ 불가피(不可避)한 → 피할 수 없는

“불가피(不可避)”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어려운 한자말로 쓰지 않고 그 의미대로 ‘피할 수 없는’이라고 풀어쓰더라도 간략함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뜻은 더욱 쉽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58조 제3항의 경우에는 문맥상 ‘해야만

◆ 불가피(不可避)한 → 피할 수 없는

하는’, ‘할 수밖에 없는’ 등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검토위원장)

② 검토위원장이 불가피한(→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토위원장이 지명하는 검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1조 (진단결과의 공개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한 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검토위원장)

② 검토위원장이 불가피한(→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토위원장이 지명하는 검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8조 (조세감면 등)

③ 국가는 진흥센터·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 활동에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수입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시설·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불가항력(不可抗力) → 어쩔 수 없음

“불가항력(不可抗力)”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한다.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권장사용),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불가항력’을 ‘어쩔 수 없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한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고소기간)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 어쩔 수 없는

◆ 불구(不具) → 신체장애(身體障礙)

“불구(不具)”란 ‘신체의 중요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말한다. 불구(不具)는 사전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거나, 불비(不備,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의 낮춤말로 쓰인다. 따라서 불구(不具)라는 말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전자의 의미로 쓰였더라도 “낮춤말”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유사한 말인 ‘(신체)장애’로 고쳐 쓰는 것이 그 어감에서 낫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도 이 용어 대신에 ‘(신체)장애’라는 정비된 용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불복(不服)이 있으면 → 불복(不服)하는 경우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신체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신체장애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불복(不服)이 있으면 → 불복(不服)하는 경우

“불복(不服)”은 ‘남의 명령·결정 따위에 대하여 복종·항복·복죄(服罪) 따위를 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승복(承服)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불복(不服)”은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결정 등에 복종하지 않고 상소·항고 등을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전문법률용어로서 규범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으며,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순화안으로 제시한 ‘승복(承服)’ 또한 ‘불복(不服)’과 다름없는 비일상적이고 어려운 용어라는 점에서 적절한 순화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불복”은 용어 자체는 그대로 사용하되 표현을 약간 수정하여 ‘불복하는 경우’ 정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원법 제11조 (청원)

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66조 (과태료)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6조 (과태료)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비행(非行) → 현재대로

“비행(非行)”은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를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및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은 모두 다 이 용어를 ‘잘못’이나 ‘못된 짓’으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관련 법령 중 경찰청 예규인 ‘소년경찰직무규칙’은 제2조에서 예규상 용어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제5호에서 “비행소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총칭한다.”라고 함으로써 “비행”을 법령상 용어화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상 “비행”을 일률적으로 ‘잘못’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청소년관련 법령상 나타나는 “비행”은 이러한 규범적인 의미가 아니라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본법 제 6 조 (가정의 책임)

- 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

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청소년보호법 제 3 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② 친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가출 및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2조 (친권상실 신고 등의 청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잘못)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사료(思料) → 판단(判斷)

“사료(思料)”는 사전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헤아림’이라는 의미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도 아닐뿐더러 이러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판단(判斷)’이라고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24조 (회피의 원인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판단)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판단)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판단)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판단)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사자(死者) → 죽은 사람

“사자(死者)”는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굳이 한자어로 써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용어로서, 단순히 우리말 ‘죽은 사람’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7조 (동전)

사자(→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사전(事前) → 미리, 앞선

“사전(事前)”은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을 의미한다. 동의어인 ‘미리’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사전에는

◆ 사체(死體) → 시체(屍體)

‘미리’로 고쳐 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용어가 조문의 표제에서 쓰인 경우에는 ‘미리’라고 고치는 것이 어색하므로, 이때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8조 (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의 사전(→현재 대로)검토)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미리)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체(死體) → 시체(屍體)

“사체(死體)”는 사전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 따위의 죽은 몸뚱이’를 의미하는 말이다. 일본형사소송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제129조, 제168조). 원래 ‘屍體(した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시(屍)’가 일본어의 상용한자 1,945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발음과 의미가 같은 ‘사(死)’를 이용하여 ‘死體(したい)’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쓰임상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체(屍體)’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시체’ 또는 ‘주검’을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④ 사체(→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시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산입(算入) → 넣어 계산함, 계산 포함

“산입(算入)”은 ‘셈하여 넣음’을 의미한다.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청소년도 이해하기 쉽게 ‘넣어 계산하다’, ‘셈해 넣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그렇게 바꾸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며(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표제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축약용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사용하거나 ‘계산 포함’ 정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년법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계산 포함))

제18조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본다.

소년원법 제31조 (학적관리)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 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넣어 계산)한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28조 (징계양정)

-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기간에 조사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입(→넣어 계산)할 수 있다.

◆ 산정(算定) → 계산(計算)

“산정(算定)”은 사전적으로 ‘셈하여 정함’이라는 의미이다. 전문법률 용어도 아니면서 일상적이지 않고 어려운 용어로, 쉬운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계산(計算)’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에서 “산정”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定)’하기도 한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서는 ‘계산하여 정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67조 (졸업사정 등)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수업시간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합산하여 산정(→계산)하되, 그 기간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87조 (실비 징수)

- ② 실비의 산정(→계산)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검사용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16461호,1999.6.30> 제 4 조 (과징금의 산정(→계산)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 8 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

- ② 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계산))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계산하여 정한다).

◆ 상당(相當) → 적절(適切)

“상당(相當)”은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해당’ 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관련 법령에서의 사용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해당’으로 바꾸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적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

-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소년원법 제20조 (환자의 치료)

- ①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질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상당(→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상시(常時) → 늘, 항상

소년원법 제21조 (전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 ①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38조 (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 등을 면회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한 비행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상시(常時) → 늘, 항상

“상시(常時)”는 ‘임시가 아닌 관례대로의 보통 때’를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늘’, ‘항상’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도 그와 같이 순화한 용어를 ‘병행사용’하자는 견해이다. 굳이 한자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뜻을 전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부사어이므로 ‘늘’이나 ‘항상’으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8 조 (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 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늘)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늘)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

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상용(常用) → 일상적으로 이용

“상용(常用)”은 ‘일상적으로 씬’을 의미한다. 이는 商用(상업상의 용무) 등과 동음이의어로서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늘 씬’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26조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이용된다고’ 정도로 바꾸는 것이 가장 매끄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늘 씬’, ‘일상적으로 씬’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일상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 상주(常住) → 계속 머물

“상주(常住)”는 ‘늘 일정하게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常駐(군대 따위가 언제나 머물러 있음) 등 다양한 동음이의어를 가지는 말로서,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과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은 ‘상주’를 ‘계속 머물다’, ‘늘 살고 있다’로 고쳐 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계속 머물고) 생업에 종사할 것

◆ 생계비(生計費) → 생활비(生活費)

“생계비(生計費)”는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생활비’라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 (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생활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비용의 징수 등)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 6 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등)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기초생활비)

◆ 생(生)하다 → 생기다

“생(生)하다”는 ‘生する’라는 일본어 표현에서 온 것이다. 일상용어로는 쓰이지 않는 생소한 표현이므로 같은 뜻의 우리말 ‘생기다’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도 같은 견해이다.

소년법 제34조 (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석명(釋明) → 석명(釋明), 설명(說明) 또는 증명(證明)

“석명(釋明)”은 사전적으로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이라는 의미이다. 법률에서는 “석명권(釋明權)”이라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데, 이는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해명(解明)’,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밝힘’이라는 용어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양자 중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설명요구’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석명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미 전문법률용어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해명권’이나 ‘설명요구권’ 등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호 등에서는 법률용어로서의 “석명권”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두되 한자를 함께 쓰고, 본문에서는 “석명(釋明)”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를 ‘설명’ 등으로 풀어 씀으로써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풀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석명권”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두되 한자를 함께 쓰고, 본문에서 “설명 또는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석명권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표현하고 있다(제136조, 제137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석명권)등)

-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설명)을 구하거나 입증(→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설명 또는 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선거(船車) → 선박과 차량

“선거(船車)”는 ‘배와 수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용어로서, 법령에 자주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흔히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우리말로의 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법령상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와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이다. 여기서 “선거”가 형법상의 여러 규정, 즉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죄), 제177조(현주건조물일수죄), 제186조(교통방해죄), 제306조(주거침입죄) 등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선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박 이외에도 ‘자동차’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상의 이 조문에 상응하는 일본형사소송법 제114조(책임자의 입회), 제116조(야간집행의 제한)는 그 대상을 “선박(船舶)”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해당 조문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우리 형사소송법의 처음의 취지는 ‘선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거”가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문들은 영장집행, 검증 등 강제처분을 제한하는 성격의 것들이므로 ‘선박’ 이외에 ‘차량’이 포함된다 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船車)”를 그대로 우리말로 풀어서 ‘선박과 차량’이라고 바꾸어 써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2003년 정비편람은 ‘배와 차량’이라는 순화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열되는 다른 한자어들과의 균형상 ‘선박과 차량’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①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배 또는 차량)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배 또는 차량)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선용(善用) → 바르게 씬, 활용(活用)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배 또는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 선불(先拂) → 선지급(先支給)

“선불(先拂)”은 ‘일이 끝나기 전이나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치름’을 의미한다. ‘先払い’라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우리말로 순화가 필요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선지급’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용어인 ‘선불금’ 또한 ‘선지급금’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6 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위계 또는 선불금(→선지급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선용(善用) → 바르게 씬, 활용(活用)

“선용(善用)”은 ‘알맞게 쓰거나 좋은 일에 씬’을 의미한다. 이는 쉬운 우리말 ‘바르게 씬’으로 순화할 수 있다. 선용은 보통 ‘여가’라는 용어와 결합하여 ‘여가선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여가활용’ 정도로 고쳐 쓰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70조 (보호소년등의 일과)

③ 원장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휴일에는 직원의 지도하에 보호소년등이 다양한 여가선용(→여가활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여가활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 성명(姓名) → 이름

“성명(姓名)”은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성(姓)은 가계(家系)의 이름이고, 명(名)은 개인의 이름이다.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만 굳이 이러한 한자말을 쓰지 않고 ‘이름’이라고 하여도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가능하면 한글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 제 5 조 (송치서)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이름),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이름),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의 경과후

◆ 성행(性行) → 성품(性品)과 행실(行實)

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비밀누설금지)

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이름)·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0조 (민간인의 참여조장)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이름)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신고방법)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이름)·주소와 전화번호

◆ 성행(性行) → 성품(性品)과 행실(行實)

“성행(性行)”은 ‘성품과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확한 뜻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성품과 행실’이라고 그 의미대로 풀어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회 ‘법률용어 표준화기준’ 중 축약된 용어 사용금지의 원칙에 합치되는 일이기도 하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또한 ‘성품과 행실’, ‘행실’과 병행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년부 송치 등)

① 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성품과 행실)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 성품과 행실

소년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성품과 행실)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수탁기관 등의 지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등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성품과 행실)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성품과 행실)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관(所管) → 담당(擔當)

“소관(所管)”은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및 동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 시행령, 아동복지법 및 동 시행령 등 다수의 청소년관련법령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상대적으로 쉬운 ‘담당(擔當)’ 정도로 고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설치)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담당) 사무를 수행한다. → 담당 사무를

청소년보호법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담당)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명(疏明) → 한자 함께 씀

“소명(疏明)”은 사전적으로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이라는 뜻이다. 법률적으로는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

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이를 '증거제시' 또는 '변명'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변명(辨明)'이라는 단어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고, "소명"이 단지 '증거자료'만이 아니라 그에 관련한 설명 등을 포함하여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행위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거제시'라는 표현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현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심판규칙 제35조 (보호관찰기간연장의 신청)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39조 (보호처분의 변경)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 소요되다 → (비용이) 들다, (시간이) 걸리다

“소요(所要)”는 한자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 쓰면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바’라는 뜻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는 용어로서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이를 ‘필요한’ 또는 ‘사용되는’이라는 용어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비용이) 들다’ 또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필요한’ 정도의 용어로 순화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는 국가의 비용보조

◆ 소요되다 → (비용이) 들다, (시간이) 걸리다

가 가능한 여섯 가지 사유를 동일한 문맥으로 규정하면서 이 가운데 제4호와 제4호의2에서는 “소요되는”을, 제1호, 제2호, 제5호에서는 “소요되는” 대신 “필요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4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소요되는(→필요한)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1조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필요한) 비용
-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필요한) 비용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소정(所定)의 → 정(定)해진

“소정(所定)”은 주로 ‘소정’, ‘소정의’ 꼴로 쓰여 “정해진 바”를 의미한다. 굳이 이러한 한자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정한’, ‘정해진’ 등 쉬운 말로 나타낼 수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이미 정한’, ‘정해진’과 병행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③ 수련시설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된 수련거리를 통한 수련활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 ①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소지(所持) → 지님

“소지(所持)”는 ‘가지고 있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가지다’, ‘지니다’라고 정비된 용어만 사용하자

◆ 소할(所轄) → 관할(管轄)

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36조(수거·파기)는 본문 가운데 “소유하거나 소지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고 가정할 때, ‘가지다’라는 표현은 ‘소지’보다는 오히려 ‘소유’ 쪽에 가까운 뜻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지’를 대신할 우리말은 ‘가지다’ 보다는 ‘지니다’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지녀서는) 아니된다.

소년원법 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소지한(→지닌)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36조 (수거·파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가지고 있거나 지니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소할(所轄) → 관할(管轄)

“관할(管轄)”은 ‘일정한 권한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지배함’이라는 의미이고, “소할(所轄)”은 사전적으로 ‘관할하는 바’라는 의미이다. 따라

서 양자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주로 쓰이는 “관할(管轄)”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본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또한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 ①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관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소할(→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 ②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관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관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소할(→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소환(召喚) → 출석요구(出席要求)

“소환(召喚)”은 한자의 의미로만 보자면 단순히 ‘부른다’는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을 의미한다. 한자어로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어려운 용어이나, 용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 외의 규범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전문법률용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그대로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용어의 의미나 형사소송법상의 쓰임을 고려하면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출석요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그 의미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법도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00조의2(체포),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21조(제삼자의 출석요구) 등에서 “출석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이를 “출석요구”(제309조) 또는 “기일통지”(제150조, 제217조, 제208조)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면서 때에 따라서는 양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제167조, 제168조). 법령용어 순화 및 통일화의 관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이와 관련된 용어인 소환장(召喚狀)에 대해서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는 ‘출석요구서’, ‘부름표’로 정비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정보호심판규칙은 제18조 제3항에서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함으로써 “출석요구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소년법 제13조 (소환(→출석요구), 동행영장)

- ①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출석요구)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8조 (소환)

- ①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출석요구)는 소환장(→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소환장(→출석요구서)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출석이 요구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출석이 요구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출석요구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소훼(燒燬) → 태움

“소훼(燒毀)”는 ‘불에 타서 없어짐. 또는 불에 태워 없앴’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화력에 의해 건조물 등이 망가짐을 의미한다. 방화죄에 있어 소훼는 기수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소훼한’을 ‘(불에)태운/ 태워 없앴’과 병행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있는 상태가 되면 소훼가 된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1970. 3.24. 선고 70도330 판결 등),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반드시 ‘태워 없앴’ 정도여야만 방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태움’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송달(送達) → 현재대로

“송달(送達)”은 사전적으로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어 줌’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보냄’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송달”은 한자어의 의미만으로는 단순히 ‘보낸다’는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적 의미를 가진 전문법률용어를 ‘보낸다’는 단선적인 용어로는 그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현재와 같이 “송달”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도 같은 견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송달’은 ‘보냄’으로 순화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법률용어로서의 “송달”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여전히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 5 조 (통지의 방식)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현재대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14조 (소환의 방법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현재대로)에 의하여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등록대상자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송달(→현재대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와 송달(→현재대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계도문의 작성 등)

④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범죄자관련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진술 내용을 기초로 제9조에 따른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상 등을 공개할 대상(이하 “신상공개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사실과 공개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현재대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

⑤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을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현재대로)하여야 한다.

◆ 송부(送付) → 보냄

송부(送付)는 사전적으로는 ‘편지나 물품 따위를 부치어 보냄’을 의미한다. 법에서는 어떤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다른 장소나 사람에게 서류 기타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하며, 보내는 것을 “발송”이라 하고, 받는 것을 “도달”이라고 한다. 송부라 하면 보통 발송으로부터 도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송부하다’를 ‘보내다’, ‘부치다’, ‘발송하다’ 등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4조, 소년법 제32조 등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서 검토해 보건대 정비안 중에서도 가장 흔히 쓰이는 쉬운 표현인 ‘보내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송달”의 경우와 달리 “송부(送付)”는 단순히 ‘보내다’는 의미 이외에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갖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모두 이를 ‘보냄’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제호 등 축약명사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부”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제298조, 제352조, 제400조 등). 청소년관련 법령에서의 “송부” 또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인도와 동시에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보내야) 한다.

→ 보내야 한다.

소년원법 제31조 (학적관리)

-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11조 (조사의 방법)

- ②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의 송부를(→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송치하다 → 보내다, 넘겨받다

“송치(送致)”은 한자어의 의미를 풀어 쓰면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함’이라는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로서의 의미이다. 법제처 법률용어순화편람은 군검찰사무처리규칙상의 “송치부(送致簿)”라는 용어를 ‘보내는(보낸) 장부’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송치”의 규범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무

리한 순화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년부 송치(→현재대로))

- ① 검사는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송치(→현재대로)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현재대로)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현재대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현재대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법원의 송치(→현재대로))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현재대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수개(數箇) → 여러 개

접두사로 쓰이는 “수(數)”는 ‘여럿’의 의미이다. 따라서 “수개(數箇)”는 ‘여러 개’, “수인(數人)”은 ‘여러 사람’, “수통(數筒)”은 ‘여러 통’을 의미하게 된다.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이고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표현한다는 법령용어 순화의 관점에서 위와 같이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등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렇게 바꾸어 쓰고 있다(제25조, 제53조, 제65조 등).

형사소송법 제 5 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9 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⑤ 수개(→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수괴(首魁) → 우두머리

수괴(首魁)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우두머리’, ‘두목’, ‘주모자’라는 정비된 용어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수령(受領) → 받음

“수령(受領)”은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じゅりょう’라는 일본어식 표현으로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수령하다를 ‘받다’로 바꾸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며(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용어가 “수령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48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금품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50조 (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 등에게 탁송된 금품에 대하여 본인이 수령을(→받기를) 거부하거나 보호 및 교정교육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행형법 제42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소년원법 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현재대로)을 교부하여야 한다.

◆ 수리(水利) → 물의 이용

“수리(水利)”는 사전적으로 ‘수상 운송의 편리’ 또는 ‘식용, 관개용, 공업용 따위로 물을 이용하는 일’을 말한다. 형법상 수리방해죄에서 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없어지게 만드는 것, 수문을 파괴하는 것, 기타 방법 즉 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점을 참고할 때, “수리”는 ‘물의 이용’으로 바꾸는 편이 적절하고, 이렇게 고쳤을 때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물의 이용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리(受理) → 받음, 받아들임

수리(受理)는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을 뜻한다. 굳이 수리(受理)라는 한자말을 쓰지 않더라도 ‘받아들임’, ‘받음’ 정도로 순화하면 이해하기

◆ 수수(授受) → 주고받음

쉽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수리하다는 ‘받아들이다’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 ②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받아들이는 것과)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수수(授受) → 주고받음

“수수(授受)”는 한자어의 뜻 그대로 ‘주고받음’이라는 의미이다. 불필요한 한자어이므로 쉬운 우리말 ‘주고 받음’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같은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주고받을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열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은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 수립(樹立)하다 → 세우다

“수립(樹立)”은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움’을 의미한다. 굳이 한자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 의미대로 ‘(계획을) 세우다’, ‘짜다’ 등으로 고쳐 쓰더라도 본래 취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계획을) 세우다’, ‘짜다’를 병행사용

하자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단순히 ‘세우다’라고 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기본법 제 8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세우고 실시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84조 (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세우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8조 (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세우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수수(收受) → 받음

“수수(收受)”는 ‘거두어서 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동음이의어인 授受(수수, 물품을 주고받음)와 혼동될 수 있다. 또한 굳이 한자말로 쓰지 않고 ‘받음’ 정도로 고치면 오히려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3 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종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받게 하거나

◆ 수수(授受) → 현재대로

“수수(授受)”는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 없이 사용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수수(收受, 거두어서 받음)와 혼동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은 ‘주고 받음’으로 쓸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이처럼 바꾸어 쓰는 것을 권장하였다(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라는 말이 일반인의 이해가 매우 어려운 용어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이 용어가 사용되는 법조문의 용례를 보면 모두 한자어인 행위태양을 나열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용어만을 순우리말로 표기하면 다른 행위태양과의 균형 문제뿐 아니라 언어사용의 경제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령용어 전반에 대한 우리말화 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행형법 제46조 (징벌)

①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4. 흥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현재대로) 또는 은닉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현재대로)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현재대로)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현재대로)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현재대로)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현재대로)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 수여(授興) → 줌

“수여(授興)”는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대로 ‘주다’로 바꾸면 간결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훨씬 쉬운 표현이 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주다’나 ‘드리다’와 병행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소년원법 제34조에서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의 경우 ‘발급’으로 고치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년원법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발급))

- ①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31조 (포상)

- ①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상품 등의 수여(→상장·상품 등을 주거나)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65조 (졸업장의 발급 등)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장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적학교의 졸업장은 가능한 한 보호소년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소년원학교장이 본인에게 직접 수여하여야(→주어야) 한다.

◆ 수용(受用) → 받아들임

“수용(受容)”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이는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收用(수용, 거두어들여 사용함), 收容(범법자, 포로 난민, 관객, 물품 따위를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모아 넣음) 등 동음이의어와 혼동될 수 있다. 세 가지 표현 중 법령용어, 특히 청소년 관련 법령용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수용(收容)’이고, ‘수용(收用)’은 행정관련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양자 모두 일정

◆ 수인(數人) → 여러 명

한 규범성을 가진 전문법률용어로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용(受用)’은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 사례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쉬운 표현인 ‘받아들이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수용’을 ‘받아들이’이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받아들이, 받아들이다’로 정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8 조 (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 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할(→받아들이) 수 있도록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소년법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收容)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의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참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0조 (수용 및 사용)

-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수인(數人) → 여러 명

“수(數)”라는 접두어가 ‘여럿’을 의미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수인(數人)”을 어떠한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인가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여럿’이라는 표현을,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을,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여러 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25조(관련재판적), 제53조(선정당사자),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등에서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이 이 표현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에서는 개정 전 “선정된 수인의 당사자 가운데”이던 표현을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라고 바꾸고,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에서는 개정 전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이었던 표현을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으로 바꾸고 있다.

위에서 제안된 표현들은 모두 같은 의미의 우리말로 어떤 표현을 선택하더라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 이 말이 뒤에 오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등과 결합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 또는 ‘여러 사람의 변호인’이라는 표현이 되면, 이 말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명의 당사자를 위한 한 명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라는 것인지가 혼동될 염려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람” 대신 “여러”를 사용하고 있는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러한 난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제32조의2(대표변호인),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등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조문들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여러 명’이라는 표현을 기본으로 하되, 확일적으로 한 가지의 용어로만 바꿀 것이 아니라 조문에 따라 ‘여러 명’ 또는 ‘여럿’ 등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꾸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수인(數人) → 여러 명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2. 수인(→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② 수인(→여러 명)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 ① 수인(→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여러 명)에게 교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1조 (감정보고)

② 감정인이 수인(→여러 명)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1조 (수인(→여러 명)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여러 명)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여러 명)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수종(數種) → 여러 종류

“수종(數種)”은 사전적으로 ‘몇 가지의 종류. 또는 두서너 가지’를 의미한다.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과악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그 의미대로 ‘여러 종류’라고 풀어 씀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형법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수죄(數罪) → 여러 범죄

“수죄(數罪)”는 ‘여러 가지의 범죄’를 뜻한다. 이 용어는 受罪(수죄, 죄를 받음), 首罪(수죄, 여러 범죄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죄) 등의 동음이의어를 가지므로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혼동될 수 있고, 일상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는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수죄를 ‘여러 죄’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죄’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라는 뜻이므로 범죄보다 넓은 개념이다. 형법상 ‘수죄’(數罪)에서 죄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즉 ‘범죄’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수죄’는 ‘여러 범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여러 범죄)

◆ 수진(受診) → 진료(診療)

“수진(受診)”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 ‘진찰을 받음’이라는 의미이다. 한자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글자이지만 이를 한글로만 써 놓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본문에서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제호의 “수진(受診)”은 ‘진료(診療)’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수진자(受診者)’를 ‘진료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진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수통(數筒) → 여러 통

“수(數)”의 의미는 “수개(數箇)” 및 “수인(數人)”에서 본 바와 같다. “통(筒)”은 편지나 서류 등을 헤아리는 조수사로 우리말로서의 쓰임이 확고할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할 용어도 적당치 않다. 따라서 “수통(數筒)”은 ‘여러 통’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82조 (수통(→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① 구속영장은 수통(→여러 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영장청구의 방식)

- ② 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제기한 서면1통(수통(→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5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①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수통(→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수탁(受託) → 위탁(委託)받음

“수탁(受託)”은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음. 또는 그런 일’ 또는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음’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수탁하다를 ‘위탁받다’, ‘부탁을 받다’와 병행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동태형 동사인 ‘수탁’에 비해 능동태형 동사인 ‘위탁’이 좀더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을 수동형으로 표시한 ‘위

탁받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탁”은 청소년관련 법령에서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와 같이 본문 중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탁자” 및 “수탁기관”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음’ 또는 ‘위탁받은(는) 자(또는 기관)’라고 바꾸어 쓰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 ④ 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위탁받은 자)에게 소년감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수탁기관(→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제5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등의 수탁기관(→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위탁받는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위탁받는 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위탁을 받는데)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위탁받은 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1조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위탁받아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수치심(羞恥心) → 부끄러움

“수치심(羞恥心)”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한자말이므로 ‘부끄러움’이라는 쉬운 말로 바꾸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부끄러움)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부끄러움)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순응(順應) → 순순히 따름

“순응(順應)”이란 사전적으로는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름’ 또는 ‘생물체의 기능, 성

◆ 순차(順次) → 차례

질, 상태가 주어진 외부 조건의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각 작용이 변하는 일' 등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순순히 따르다'의 의미라고 파악되므로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이 의미전달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순순히 따를 것)

◆ 순차(順次) → 차례

“순차(順次)”는 ‘돌아오는 차례’라는 의미이다.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말 ‘차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순차로’를 ‘차례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56조 (교육단계)

- 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차례로) 실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②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차례로 하는)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형사소송법 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 ①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차례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 승계(承繼) → 이어받음

“승계(承繼)”는 법률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한자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 의미대로 ‘이어받다’라고 고쳐 쓰더라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더욱 쉽고 친근한 표현이 될 것이다. 다만 표제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축약용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승계(→현재대로))

-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 상속, 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이어 받는다).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이어 받는다).

◆ 시일(時日) → 일시(日時)

“시일(時日)”은 한자어의 의미로 볼 때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

되는 ‘일시(日時)’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의 제안도 이와 같다. 형사소송법도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등에서 이미 “일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② 증인신문의 시일과(→일시와)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정(是正) → 바로잡음

“시정(是正)”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굳이 시정(是正)이라는 한자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잡음’이라는 쉬운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시정하다는 ‘(잘못을) 바로잡다’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표제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축약용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사용하면 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37조 (시정명령(→현재대로))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해당 사항을 바로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수익사업)

-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외의 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수익사업을 바로잡거나 그만둘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시정명령(→현재대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시찰(視察) → 살펴봄

“시찰(視察)”은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地)의 사정을 살핌’을 의미한다.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용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시찰하다’는 그 의미대로 ‘살펴보다’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도 같은 의견이다. 다만 표제어로 사용되는 경우나 “시찰부”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순화할 적절한 용어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현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행형법 제 5 조 (교도소등의 순회점검 등)

② 판사와 검사는 교도소등을 수시로 시찰할(→살펴볼) 수 있다.

행형법 시행령 제 3 조 (판사 등의 시찰(→현재대로))

① 판사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현재대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찰을(→살펴보도록)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현재

대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신문(訊問) → 심문(審問)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은 겉으로 볼 때에는 매우 유사하여 같은 말인 것처럼 인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각 용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의미를 따져보면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문(訊問)’은 그 전제로서 질문하는 사람이 이미 사안의 경과 등에 대해서 알고 있으므로,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실직고(以實直告)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2007년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좀 더 당사자주의적인 소송구조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신문(訊問)’한다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적인 구도를 원칙으로 삼는 구조와 더 이상 조화되기 어려운 용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문(訊問)은 심문(審問)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심문) , 감정, 통역, 번역)

- ① 소년부판사는 증인을 신문(→심문) 하고 감정,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심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심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심문) 등 증인의 신문(→심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심리의 비공개)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 대하여 증인신문(→심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여부와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심문) 등 증인신문(→심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참고] 소년법 제11조 (조사명령)

①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현재대로)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참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조사명령 등)

① 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현재대로)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참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판결전조사)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현재대로)하거나 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신빙(信憑) → 신뢰(信賴)

“신빙(信憑)”에서 ‘빙(憑)’은 ‘의지하다’ 또는 ‘의거하다’라는 의미로, “신빙(信憑)”은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음’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상 “신빙”은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라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진술이 이루어진 정황 등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사실 자체 등을) 믿는다’는 표현만으로는 “신빙”의 의미를 모두 포섭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는 ‘신용’이나 ‘신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신용’으로 순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은 ‘굳게 믿고 의지함’, ‘신뢰’는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로서 양자의 사전적 의미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말의 어감상 더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신용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와 ‘신뢰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라는 표현을 비교해 보면, “신빙”의 이러한 어감을 자연스럽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는 ‘신뢰’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된다.

참고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와 형사소송규칙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의 “신용” 또한 ‘신뢰’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 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

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의 진술)

- 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신용(信用) → 신뢰(信賴)

⇒ “신빙(信憑)” 참조.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제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3. 기타 특히 신용(→신뢰)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형사소송규칙 제77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② 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신뢰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심판(審判) → 심리(審理)와 재판(裁判)

“심판(審判)”은 법률적으로 ‘심리(審理)와 재판(裁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법령용어의 순화가 한자어 또는 일본어투의 순화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축약의 지양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원래의 말인 ‘심리·재판’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의 견해도 같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 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34조, 제88조, 제454조 등). 다만 “소년심판규칙”처럼 법령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간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소년심판규칙 제30조 (결정서등·초본의 청구)

- ①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심리와 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3조 (결정서의 등·초본의 청구)

- ① 행위자·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심리와 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심리와 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실비(實費) → 실제 비용(實際 費用)

“실비(實費)”는 사전적으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용어를 축약하여 법문에 사용함으로써 표현이 어

색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를 풀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실비”의 경우 ‘실제 비용’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비용의 징수 등)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 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심신장애(心神障礙) → 정신장애(精神障礙)

법률상 “심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심신(心神)”과 “심신(心身)”의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심신(心神)”은 ‘마음과 정신’의 의미이고, “심신(心身)”은 ‘마음과 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발음은 같지만 전자는 정신장애만을 의미하고 후자는 정신장애 뿐 아니라 신체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로 다르다. 1992년의 형법개정법률안은 심신장애자(제10조)와 준사기죄(제348조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던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정신장애’라는 용어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21조 및 제212조). “심신(心神)”이라는 표현이 매우 어려워 잘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글로 쓰인 경우에는 ‘심신(心

身) 장애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후자가 사용되는 예로 법원조직법 제47조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心身)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9조 또한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 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의 해당 조문은 최근 신설된 것으로 한자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동조가 신설된 시기(2004.1.20)나 조문의 구조로 볼 때 법원조직법과 같은 취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심신장애’ 또는 ‘심신장애’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그러나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제33조, 제424조, 제438조, 제469조, 470조 등에서 “심신장애(心神障礙)” 또는 “심신(心神)의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장애’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록정보의 열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心神)장애(→정신장애)자로서 청소년

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8 조 (귀가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心神)장애(→정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心神)장애(→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心身)장애(→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心神)의 장애(→정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 심신장애(心神障礙) → 정신장애(精神障礙)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心神)장애(→정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心神)의 장애(→정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心神)장애(→정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참고] 소년법 제58조 (심리의 방침)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心身)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心身)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心身)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상담 및 보호)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심신(心身)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심(甚)히 → 매우

“심(甚)”이라는 한자는 ‘정도가 지나침’을 뜻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심히’는 ‘매우’와 병행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은 아니지만 ‘매우’라는 한글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쉬운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렇게 고쳐 쓰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아동(兒童) → 어린이

“아동(兒童)”은 ‘신체적·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한자말인 아동(兒童)보다는 유사한 한글표현인 ‘어린이’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도 ‘아동’을 ‘어린이’와 병행사용하자는 의견을 내어놓은 바 있다.

아동(→어린이)복지법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어린이)"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수탁기관등의 지정)

-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 제1호, 제2호,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아동(→어린이)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등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알선(斡旋) → 주선(周旋)

“알선(斡旋)”은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이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알선하다’를 ‘주선하다’나 ‘마련하다’와 병행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는 ‘주선하다’라는 표현도 ‘마련하다’나 ‘두루다’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모두 참고하면 ‘알선’은 ‘주선(周旋)’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일정한 경우에는 유의어인 ‘소개’ 정도로 고치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주선)·매개하는 행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원호)

-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주선)

소년원법 제45조의2 (사후지도)

- ① 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등이 원하는 경우 본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소개) 등 필요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다.

◆ 압수(押收) → 현재대로

“압수(押收)”는 사전적으로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음’이라는 의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거둬 감’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는 법률적으로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의 의미로서, 단순히 강제로 ‘거둬 가는 것’ 이상의 규범적 의미를 지니는 전문법률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같이 현재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27조 (검증, 압수(→현재대로), 수색)

- ① 소년부판사는 검증, 압수(→현재대로)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현재대로)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검증·압수(→현재대로)·수색)

- ① 법원은 검증·압수(→현재대로)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압수(→현재대로)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양정(量定) → (양, 정도) 결정(決定)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현재대로))

-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현재대로)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법원은 압수(→현재대로)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야기(惹起) → 일으킴

야기(惹起)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일으킴’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야기(惹起)하기/되다’를 ‘일어나다’, ‘일으키다’, ‘생기다’와 병행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그 의미를 살려서 ‘일으키다’로 적절히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일으킨)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일으킨)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양정(量定) → (양, 정도) 결정(決定)

“양정(量定)”은 ‘헤아려 정함’을 의미한다. 특히 ‘형의 양정’이란 법원이 법정형에 법률상의 가중·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여 얻어진 처단형

의 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양형(量刑)이라고도 한다. 형의 양정은 좁은 의미로는 형종·형량의 결정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과료의 환형유치 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도 이해된다. 형의 양정, 즉 양형의 부당은 상소이유가 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양정을 ‘양 결정’과 병행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의견이다. 그런데 소년원법 시행령 제24조의 ‘징계양정’은 ‘징계의 정도를 결정’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정’은 ‘(양, 정도) 결정’으로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24조 (징계)

-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 등을 징계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양정에(→징계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공정을 기하고 교육적 효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소년원법시행규칙 제28조 (징계양정(→징계 정도 결정))

-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등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기간에 조사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입할 수 있다.
- ③ 소년원장은 훈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당월 교정성적에서 30점을, 근신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당월 교정성적에서 1일에 각 10점을, 원내 봉사활동명령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당월 교정성적에서 50점을 각각 감한다.
- ④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징계를 받은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분류심사관에게 통보하여 분류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양형(量刑) → 형량결정(刑量決定)

양형(量刑)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법령에서 양형은 법원이 법정형에 가능한 수정을 가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양정(量定) 또는 형의 적용이라고도 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양형’과 ‘형량결정’을 병행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형법 제51조 등을 참고로 검토해 보건대 양형은 ‘형량결정’으로 고쳐 쓰는 것이 일반인 및 청소년이 그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 ⑤ 부착명령의 선고는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형량결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 엄수(嚴守) → 지킴

“엄수(嚴守)”는 사전적으로 ‘명령이나 약속 따위를 어김없이 지킴’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꼭 지킴’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지킴’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지키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여부(與否) → 할 것인지(한지) 아닌지

“여부(與否)”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이다. 문맥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라는 선택적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말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다. 다만 제호나 명사구로 이루어진 선택항 등에서는 이를 풀어 쓰는 것이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소년원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등), 이러한 경우에는 “여부”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원칙적으로 ‘-할 것인지(한지) 아닌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되(제73조, 제134조, 202조 등), 제호나 명사구의 선택항에서는 “여부”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제73조, 153조, 제250조 등).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어식 표현(するかどうか)이라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소년법 시행령 제33조 (음식물 등의 반입허가)

-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품에 대하여 유해여부(→유해한지 아닌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수탁기관등의 지정)

- ⑤ 법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등이 소년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이용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 연계(連繫) → 연결(連結)

“연계(連繫)”는 ‘잇따라 뻗’ 또는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또는 그 관계’ 등의 의미를 갖는 말이다. 이는 같은 한자말이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말인 ‘연결’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이해를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는 ‘연계하여’를 ‘함께’, ‘아울러’, ‘이어’ 등으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부사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이처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연결)·조정과 상호협력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7 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연계(→연결)·협력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연결) 등 아동의 건전육

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연령(年齡) → 나이

“연령(年齡)”은 ‘나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도 널리 쓰이는 용어지만, 한자말보다는 ‘나이’라는 순 우리말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연령’을 ‘나이’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연령(→나이)·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 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 ①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나이)·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법 제 3 조 (기본이념)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열람(閱覽) → 읽어(훑어) 보다

“열람(閱覽)”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을 의미한다. 열람이라는 어려운 한자말을 쓰기 보다는 ‘훑어 보다’, ‘읽어 보다’ 등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병행사용),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 용어가 제호에 쓰이거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축약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읽어볼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등록정보의 열람(→현재대로))

- ④ 제1항에 따라 열람하도록(→읽어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열람(→현재대로)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열석(列席) → 출석(出席)

“열석(列席)”은 ‘자리에 죽 벌여서 앉음’ 또는 ‘식장이나 회의장 따위에 참석함’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줄지어 앉음’ 또는 ‘참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 곳은 제275조 한 곳으로, 이 조문에서의 “열석(列席)”은 ‘참석’ 또는 ‘출석’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판사와 법원공무원 및 검사가 공판에 참석하는 것을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같은 조에서 검사의 공판 참석에 “출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도 ‘출석’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② 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출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 영아(嬰兒) → 갓난아기, 젖먹이아기

“영아(嬰兒)”는 ‘젖먹이’를 의미한다. 형법상 영아유기죄(제272조)에서의 영아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젖먹이 아기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영아살해죄(제251조)에서 영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한정된다. 젖먹이 아이를 넘어서서 유아(幼兒)에 이르게 되면 살인의 경우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유기의 경우 단순유기죄(제271조 제1항)의 객체가 된다.

양자의 객체가 일반적인 젖먹이 아기인지 아니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갓난아기인지로 구분됨에도, 제호에서는 동일하게 “영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용어 사용상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형법 제251조의 영아는 ‘갓난아기’로 제272조의 영아는 ‘젖먹이아기’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도 이와 같은 정비안을 제시하고 있다.

형법 제251조 (영아(→갓난아기)살해) → 갓난아기 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갓난아기)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2조 (영아(→젓먹이아기)유기)

직계존속이 치육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젓먹이아기)를 유기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예납(豫納) → 미리 냄

“예납(豫納)”은 ‘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냄’이라는 의미이다. 한자어를 풀어 쓰면 ‘미리 납부’가 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부(納付)”는 축약명사형으로 쓰이지 않는 이상 ‘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예납” 또한 ‘미리 냄’으로 하면 충분할 것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예납하다를 ‘미리 내다’, ‘미리 납부하다’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및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비용의 부담)

②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비용을 미리 내도록) 명할 수 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9조 (임시위탁비용)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미리 낼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미리 내야) 한다.

◆ 오기(誤記) → 잘못된 기록

“오기(誤記)”는 ‘잘못 기록함 또는 그 기록’이라는 의미이다. 한글로 표기하여도 뜻의 변화나 문맥의 흐름에 영향이 전혀 없어서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나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잘못된 기록’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②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잘못된 기록이)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잘못된 기록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 ① 재판서에 오기(→잘못된 기록)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오욕(汚辱) → 오염(汚染) 및 모욕(侮辱)

“오욕(汚辱)”이란 ‘(명예 따위를) 더럽히고 욕되게 함’이라는 의미다. 법령에서 오욕이란 폭행 기타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모욕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손괴·손상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오욕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범죄에는 언

어에 의한 경우나 손괴·손상의 경우의 별개 범죄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오욕한’을 ‘더럽히고 욕되게 한’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권장사용), 법제처 2006년 정비편람 및 2006년 한글학회 등의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5조의 경우 한자어로 이루어진 행위태양을 나열하고 있는바, 여기서 순화안을 관철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오욕”의 한자어를 이용한 풀이이면서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오염 및 모욕’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손상, 제거, 오염 또는 모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오류(誤謬) → 잘못

“오류(誤謬)”는 사전적으로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사용되는 “오류”는 모두 판결의 내용 또는 재판서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용어가 사전적인 의미 외에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쉬운 우리말인 ‘잘못’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

로써 정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①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오인(誤認) → 잘못 인정, 잘못 생각

“오인(誤認)”이란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을 의미한다. 법령에서 오인이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였으나 그 인식이 그릇된 것, 즉 인정된 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은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오인하다’를 ‘잘못 알다’, ‘잘못 인정하다’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법조문 예컨대 형법 제16조는 ‘잘못 생각하다’를 활용하여 고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오인하다는 ‘잘못 인정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년법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의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사실인정의 잘못이 중대한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향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사실인정의 잘못이 중대한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잘못 생각한) 행위는 그 오인에(→잘못 생각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완납(完納) → 다 념

“완납(完納)”은 ‘납김없이 완전히 납부함’이라는 의미이다. “납부(納付)”를 ‘념’으로 순화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납부함’이라는 의미를 갖는 “완납”도 이에 걸맞는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다 념’이라는 표현을,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은 ‘다 념’이라는 표현과 ‘모두 념’이라는 표현을 선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의미는 같지만 어감상 ‘다 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다 념)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

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다 내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완료(完了) → 끝냄, 마침

“완료(完了)”는 사전적으로 ‘완전히 끝마침’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끝냄’ 또는 ‘마침’이라는 표현을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용어가 사용된 문맥에 어울리게 “끝냄”이나 “마침” 중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년심판규칙 제18조 (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후의 처리 등)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집행을 마친 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 9 조 (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시조치가 취소된 때
2.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

◆ 외(外) → 밖, 이외, 제외

“외(外)”는 한 가지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내(內)”와는 달리, 물리적으로는 ‘밖’ 또는 ‘바깥’이라는 표현을, 관념적으로는 ‘이외’ 또는 ‘제외’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내국민이 대한민국영역 외(→밖)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밖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밖)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이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이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②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요급처분(要急處分)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

“요급(要急)”은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용어로서, 한자를 풀어 쓰면 ‘긴급(급속)을 필요로 함’이라는 표현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책에서는 “긴급(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응용하면 “요급처분”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80조 (요급처분(→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 (요급처분(→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요(要)하다 → (필요로) 하다, 요구되다

“요(要)하다”는 ‘要する’라는 일본어 표현에서 온 것이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는 ‘요하다’를 ‘필요로 하다’, ‘요구되다’ 등으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3 등 구체적인 조문을 검토해보면 ‘요하다’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요하다’는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다’로 순화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의료·재활교육대상자 이송)

① 소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재활교육소년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신체장애 및 장기적 가료를 요하는(→필요로 하는) 만성 신체질환자

형사소송법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필요로 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필요로 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관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필요로 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기획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긴급하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당해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긴급하다) 함은 당해 보호관찰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용모(容貌) → 생김새

“용모(容貌)”는 ‘사람의 얼굴 모양’ 또는 ‘모습’ 등을 의미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이기는 하지만 한글표현인 ‘생김새’로 고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

- ① 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생김새)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청소년 또는 대상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생김새)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우려(憂慮) → 염려(念慮)

“우려(憂慮)”는 사전적으로 ‘근심하거나 걱정함 또는 그 근심과 걱정’이라는 의미이고, “염려(念慮)”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는 의미로서 양자는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염려”와(제15조, 제18조, 제70조, 제74조, 제91조, 제95조, 제101조 등), 우려(제200조의2, 제294조의2)를 섞어 사용하고 있다. 사용의 빈도로 보나 일반인의 이해도로 보나 “염려”가 더 일반화된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에서 청소년관련 법령에서도 “우려”는 “염려”로 통일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 4 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염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원법 제38조 (안전관리)

- ②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계, 기구, 재료 기타 시설 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체포)

-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한다.

◆ 우체(郵遞)에 부치다 → 우편(郵便)으로 보내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염려)가 있는 경우

◆ 우체(郵遞)에 부치다 → 우편(郵便)으로 보내다

“우체(郵遞)”는 국어사전에 ‘우편(郵便)’과 동의어라고만 해설되고 있는 용어이다. 일상적으로는 ‘우체통’이라는 표현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좀 더 쉬운 ‘우편’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는 경우 “우체에 부치다”라는 용어는 ‘우편으로 보내다’로, “우체물”은 ‘우편물’로 각각 바꾸면 될 것이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우체료’를 ‘우편요금’으로, ‘우체통’을 ‘우편함’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61조 (우체에 부치는(→우편으로 보내는) 송달)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우편으로 보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서류를 우체에 부친(→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107조 (우체물(→우편물)의 압수)

①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 이외의 우체물(→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 원본(原本) → 한자 함께 씀

⇒ “등본(謄本)” 참조.

형사소송법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原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原本),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 원인(原因) → 사유(事由)

형사소송법상의 “원인”은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한 일본형사소송법 제20조 이하의 용어가 우리 형법에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원인(原因)”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는 하지만, 그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원인”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보다는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사유(事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이 표현 또한 이와 같이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이유(理由)’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제척·기피·회피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의 의미를 표현하는 법률용어로는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의미하는 ‘이유’라는 표현보다는 ‘일의 까닭’을 의미하는 ‘사유’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46조의 “원인된 사유”는 단순히 “사유”라고 표현하면 충분할 것이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 8 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 ①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청구의 원인이(→사유가) 되는 사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사유))¹⁰⁾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10) 동조는 2005.3.31. 개정에 의해 “호주”가 삭제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

형사소송법 제18조 (기피의 원인과(→사유와) 신청권자)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조 (회피의 원인(→사유)등)

-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②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사유))

-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위증(僞證) → 현재대로

“위증(僞證)”은 사전적으로 ‘거짓으로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를 뜻한다. 형법상 위증죄에서 위증이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의 의미에 대하여는 증인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진술내용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객관적 진실과 일치되는가는 문제 삼지 않는 태도이다. 법제처 2003년 정비편

람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증은 일반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법률용어이고 그 자체로서 규범성을 획득한 전문법률용어이다. 따라서 표제어 등 축약명사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는 “허위의 진술” 등은 이를 ‘거짓말’로 고침으로써 “위증”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함과 동시에 법령용어순화의 목적도 부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는 이미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

형법 제152조 (위증(→현재대로), 모해위증(→현재대로))

-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거짓말)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157조 (선서의 방식)

-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위해(危害) → 해로움, 해침

“위해(危害)”는 사전적으로는 ‘위태롭고 해로움’을 의미한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침해나 위험을 말한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은 ‘위해’를 ‘위태롭고 해로움’으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해로움’으로 순화하되, ‘위해를 가한

다’는 표현은 ‘해친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소년원법 제38조 (안전관리)

②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계, 기구, 재료 기타 시설 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해로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형법 제14조의2 (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해치려고) 하는 때

◆ 위촉(委囑) → 맡김, 위탁(委託), 임명(任命)

“위촉(委囑)”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소년법, 소년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다수의 청소년관련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맡김’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위촉”은 어떠한 일을 특정인에게 부탁하는 경우나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다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표현으로 사용된다. 전자의 경우는 단순히 어떠한 일을 타인에게 맡긴다는 의미이므

◆ 위촉(委囑) → 맡김, 위탁(委託), 임명(任命)

로 굳이 위촉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것 없이 맡기다(서술어로 사용시) 또는 위탁(추약어로 사용시)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단순히 어떠한 일 사실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때에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법령 중에는 한 조문 내에서 “임명”과 “위촉”을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바(소년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7조 제3항), 이러한 점 또한 용어 통일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한 예라 할 것이다.

소년법 제56조 (조사의 위촉(→위탁))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맡김)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 4 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2.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참고]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 2 조 (처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③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의료·재활교육소년원에 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6급 이하 간호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 7 조 (분류심사위원회의 구성)

- ③ 분류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유년(幼年) → 어림

“유년(幼年)”은 사전적으로 ‘어린 나이나 때’를 의미한다. 불필요한 한자어의 사용으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어리다’는 표현으로 충분할 것이다.

제471조 (동전)

-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어리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유류(遺留) → 남겨 놓음, 남김

“유류(遺留)”의 사전적 의미는 ‘끼치어 둠’ 또는 ‘어떤 것을 후세에 남기어 둠’이라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유류물은 일정한 사람이 ‘남겨 둔’ 물건이다. 따라서 제108조(임의 제출물등의 압수)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서의 “유류

(遺留)한”은 “남겨 놓은”으로 바꾸어 써도 무방할 것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의견이다. 이러한 형사소송용어의 순화안과 통일하여 청소년관련 법령에서도 “유류”는 “남겨 놓음”을 문맥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소년원법 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② 원장은 사망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보호소년 등이 남긴 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남겨진 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보호소년 등의 유류금품(→보호소년 등이 남겨 놓은 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형사소송법 제10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남겨 놓은)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남겨 놓은)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유발(誘發)→ 일으킴

“유발(誘發)”은 ‘어떤 것에 이끌려 다른 일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유발이라는 한자말보다는 ‘일으킴’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2 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일으킴)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청소년보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일으켜)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 유사(類似) → 비슷함

“유사(類似)”는 ‘서로 비슷함’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 ‘비슷함’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역시 ‘비슷함’이라는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성교와 비슷한 행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①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비슷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유서(宥恕) → 용서(容恕)

“유서(宥恕)”는 ‘너그럽게 용서함’을 뜻한다. 형법에서 “유서”는 상대방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로서 간통의 유서란 간통에 대한 사후승낙을 말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유서’는 ‘용서’로 정비된 용어만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등의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중용 또는 유서(→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유해(有害) → 해로움

“유해(有害)”는 ‘해로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한자가 사용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유해(有害)하다’ 보다는 ‘해(害)롭다’가 상대적으로 쉬운 말이므로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유해한’은 ‘해로운’이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같은 순화안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 2 조 (기본이념)

-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해로운) 곡예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3 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해롭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응하다 → 응답하다, 따르다

◆ 은폐(隱蔽) → 숨김, 감춤

“은폐(隱蔽)”는 사전적으로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이라는 의미이다. 법에서는 사실·물건 등을 감추거나 숨기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은폐를 ‘가리어 숨김’, ‘감춤’, ‘덮어서 감춤’이라고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2006년 한글학회 등의 정비 기준도 ‘은폐하다’를 ‘감추다’, ‘숨기다’로 정비하자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 ‘숨기다’나 ‘감추다’ 모두 무난한 순화안으로 생각된다.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숨기기 또는 감추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응하다 → 응답하다, 따르다

“응(應)하다”는 ‘물음이나 요구, 필요에 맞추어 대답하거나 행동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소년법, 소년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아동 복지법 시행령 등 다수의 청소년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이는 같은 의미의 일본어 “應(おう)じて”에서 비롯된 것으로, 굳이 ‘응하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따르다’라는 쉬운 한글 표현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응하다’는 ‘따르다’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는 ‘응답하다’, ‘따르다’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소년법 제70조의 경우에는 ‘응답하다’를 활용하는 것이, 소년법 제29조의2는 ‘따르다’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문에 적절하게 ‘응답하다’와 ‘따르다’ 중에서 선택하여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년법 제70조 (조회응답)

- ①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응답해서는) 아니된다.

소년원법 제29조의2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 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따르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 의제(擬制) → 간주(看做), 봄

“의제(擬制)”는 사전적으로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제를 하게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보게(간주)’ 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모두 이를 ‘간주’라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도 “의제”를 모두 “간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간주” 또한 “봄”이라는 우리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서의 입장에서는 제호에서는 “간주”를 쓰고 본문에서는 “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법령은 본문에서는 이미 ‘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간주))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청소년보호법 제4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간주))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중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법인·단체의 위원,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3조 (전자장치 부착 가해제의 의제(→간주))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 의(依)한/의(依)하여 → 따른/따라

“의(依)하다”는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다’라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와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모두 ‘의한’ 또는 ‘의하여’라는 표현을 ‘따른’ 또는 ‘따라’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년법 제 8 조 (통지)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제 2 조 (임무)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소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따른)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소년심판규칙 제 2 조 (결정서)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본적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6조, 법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따른) 결정

◆ 의의신청(疑義申請) → 재판해석(裁判解釋)의 신청(申請)

“의의(疑義)”는 사전적으로 ‘글 뜻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제488조(의의신청) 단 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일 뿐 아니라 법률용어로서도 생소한 용어이다. 주석형사소송법은 이 용어가 ‘재판해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 ‘의의(疑義)신청’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의(異議)신청’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해석의 신청’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생각건대 제호만으로도 조문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호에서는 ‘재판해석의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본문의 “의의”는 ‘의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일본형사소송법은 제501조에서 “재판의 해석을 요구하는 신청”이라는 제호 아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재판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를 한 법원에 재판의 해석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형사소송법과 거의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88조 (의의신청(→재판해석의 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의문이)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재판의 해석을 신청) 할 수 있다.

◆ 이를 → 삭제

“이를”이라는 표현은 보통 앞에 나오는 말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목적격 지시대명사로 쓰인다. 이러한 문장의 쓰임은 같은 뜻의 일본어 ‘これを’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필요한 동어반복으로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다만 문장이 길어지거나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의 단어를 다시 한 번 써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③ 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삭제)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과징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삭제) 징수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삭제) 준용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삭제) 부과·징수한다.

◆ 이송(移送) → 현재대로

“이송(移送)”과 “환송(還送)”은 사전적으로는 ‘다른 데로 옮겨 보냄’ 및 ‘도로 돌려보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쓰이는 “이송”과 “환송”은 단순히 ‘옮겨 보냄’ 또는 ‘돌려보냄’의 의미를 넘어서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 및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1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이다. 용어 자체가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순화할만한 적절한 용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송”이 위와 같은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형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청소년 매매 행위) 등의 경우 단순히 물리적으로 ‘옮긴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와 달리 우리말로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제처 법률용어순화편람은 “환송”은 ‘(되)돌려 보내다’로, “이송”은 ‘(옮겨) 보내다’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송”의 경우

예시조문으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와 제367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361조의2(제361조라고 하고 있으나 제361조의2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에만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법률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년법 제 6 조 (이송)

- ① 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소년부에 이송(→현재대로)할 수 있다.
-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현재대로)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제12조 (이송)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기타 이유로써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현재대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40조 (검사에 대한 통지)

소년부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현재대로)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 ① 국외에 이송할(→옮겨 보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옮겨 보낸)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수(履修) → 마치다, 났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향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옮겨 보내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옮겨 보낸)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수(履修) → 마치다, 났다

“이수(履修)”는 ‘해당 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침’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이수하다’는 ‘마치다’, ‘났다’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마치다’로 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

소년원법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선도내용 등)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선도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

마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 인계(引繼) → 넘겨줌

“인계(引繼)”는 ‘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넘겨줌’으로 순화할 수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인계하다’를 ‘넘겨주다’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및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이송절차 등)

② 보호소년을 의료·재활교육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인계(→ 넘겨주는)기관은 당해 보호소년의 의무·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물을 인수기관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19조 (이송)

③ 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보호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보관금품 및 보관금품대장 사본 그 밖의 참고자료를 인수 소년원에 인계하여야(→넘겨주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부칙 <제7162호,2004.2.9> 제 2 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넘겨주어야) 한다.

◆ 인도(引渡) → 넘겨줌

“인도(引渡)”는 사전적으로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줌’이라는 의미이다. 국어사전은 “인도”가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경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지배의 이전’이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규범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건네줌’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원행정처 1995년 검토의견과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넘겨줌’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인도’는 특히 ‘사람’에 대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213조, 제213조의2, 제470조 등 참조), ‘넘겨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관련 법령에서의 ‘인도’도 ‘넘겨줌’으로 순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며 통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넘겨진)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인도와(→소년을 넘겨줌과) 동시에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2조 (소년부송치시의 신병처리)

- ①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

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판사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피해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넘겨주거나)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인장(印章) → 도장(圖章)

“인장(印章)”은 ‘도장’을 뜻한다. 인장보다는 도장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더 흔히 사용되므로 ‘도장’이라고 바꾸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인장(印章)”은 ‘도장(圖章)’으로, “지장(指章)”은 ‘손도장’으로 각각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및 2006년 한글학회의 정비 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어 놓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도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도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인정신문(認定訊問) → 인적사항신문(人的事項訊問)

형사소송법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인장(→도장)이 없으면 지장(→손도장)으로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127조 (영치물품의 보관)

소장은 영치물중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도장) 기타 귀
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 인정신문(認定訊問) → 인적사항신문(人的事項訊問)

“인정신문(認定訊問)”이란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
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가를 확인
하는 절차, 즉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 직업 따위를
물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한자어로는 이러한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사람을 정하는 신문’ 또는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신문’
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정신문이라는 용어의 법적 취지를
가장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신문’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
구도 같은 의견이다. 이 경우는 법원이 이미 이를 알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문”이라는 표현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84조 (인정신문(→인적사항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
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등의 고지)

① 재판장은 인정신문(→인적사항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

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판장은 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문(→인적사항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인(因)한/인(因)하여 → 말미암은/말미암아

“인(因)하다”는 말은 ‘어떤 사실로 말미암다’라는 의미이다. 단순히 쉬운 우리말 ‘말미암다’로 바꾸어 써도 그 뜻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해하기도 쉬우므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말미암은) 면적의 변경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보호시설의 업무)

③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로 인한(→말미암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따른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 3 조 (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5. 동행영장 집행불능으로 인한(→말미암은) 검사에의 송치결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 (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등으로 인하여(→말미암아)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8조 (감호·치료·상담위탁)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등으로 인하여(→말미암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일시(一時) → 잠시, 잠깐

“일시(一時)”는 부사로 쓰였을 때 ‘어느 한 시기의 짧은 동안’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일시(一時)는 명사로 쓰였을 때에는 ‘한때’, ‘일제히 같은 때’ 등을 의미한다. 분명한 문장성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일시(一時)’가 부사로 쓰인 경우에는 ‘잠시’, ‘잠깐’ 등으로 고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상담시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잠시) 보호하는 업무

소년원법 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② 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시설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잠시) 적당한 장소에 긴급 이송할 수 있다.

◆ 일시(一時)에 → 한 번에

일시(一時)는 명사로 쓰였을 때 ‘한때’ 또는 ‘일제히 같은 때’를 의미한다.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한번에’, ‘한꺼번에’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욱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과징금)

④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입증(立證) → 증명(證明)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⑤ 과징금부과권자는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말미암아) 징수할 수 있다.

◆ 일자 → 날짜

일자(日子)는 ‘날짜’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2002.1.26 공포, 2002.7. 1. 시행) 순화 안에서 한자어의 순화원칙을 보면, ‘일상 용어라 할 수 있으나 좀 더 순화할 수 있는 단어를 순화’하도록 하고 있다.¹¹⁾ 일자(日子)도 이러한 용어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날짜’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수련활동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①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내용, 참여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날짜

◆ 입증(立證) → 증명(證明)

“입증(立證)”은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이라는 의미이다. ‘증거를 내세움’이라는 의미의 “입증”이나 ‘증거를 들어 밝힘’이라는

11) 국회 법제실,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 2004, 51~52면 참조.

의미의 ‘증명’은 결국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모두 한자어이지만 ‘증명’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이므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같은 견해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의2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등의 통보 등)

③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보대상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증명)할 수 있는 사항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

◆ 입회(立會) → 참관(參觀)

“입회(立會)”는 사전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봄’을 의미한다. 일본어 ‘立ち会う’에서 비롯된 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및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는 입회를 ‘참여’, ‘현장출석’으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보면 소년원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 경우에는 ‘참관’으로 고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보호소년이 부모나 변호인과 면회할 때 소년원 직원은 그 대화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며, 옆에서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참관’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회는 이 용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조문에 따라서 ‘참관’, ‘참여’, ‘현장출석’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37조 (면회의 입회)

- ① 보호소년 등의 면회 시에는 직원이 입회(→참관)하여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면회에 입회(→참관)하는 직원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 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 9 조 (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 ③ 보호소년등이 여자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치는 여자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자직원의 입회(→참관)하에 의사나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다.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35조 (공휴일의 면회)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면회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회접수 및 입회는(→참관은) 당일 당직근무자가 담당하되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 면회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자(者) → 사람

“자(者)”는 사전적으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좀 얽잡아 이르는 말로서, ‘사람 또는 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일본어에서 ‘もの’라고 훈독(訓讀)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음독(音讀)한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특히 형법의 경우 “자(者)”와 “사람”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者)”라는 표현을,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이라는 표현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형법 전반에 걸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者)”는 좀 더 부드럽고 비권위적인 표현인 ‘사람’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나 국어연구원 법령안 순화세부지침 또한 “자(者)”를 ‘사람’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자(者)”를 모두 “사람”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제54조, 제80조, 제107조 등). 청소년 관련 법령상의 “자(者)” 또한 이와 같이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년법 제70조 (조회응답)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원법 제48조 (가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용된 자는(→사람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 6 조 (가정의 책임)

- 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사람은)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사람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자복(自服) → 스스로 고백(告白)

“자복(自服)”은 사전적으로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함’을 뜻한다. 형법에서 “자복”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일을 말한다. 보통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백한 경우에는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할 뿐이지만, 자복은 범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이전인가 이후인가와 관계없이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2003년 정비편람 및 2006년 한글학회 등의 정비 기준에서도 ‘자복하다’는 ‘스스로 고백하다’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스스로 고백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저지(沮止) → 막음

“저지(沮止)”는 ‘막아서 못하게 함’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저지하다를 ‘막다’, ‘막아내다’와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병행사용),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13조 (청원의 편의 제공)

-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청원을 저지하거나(→막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 ④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3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막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의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행형법 제6조 (청원)

- ⑤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막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강요하거나, 막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전단(傳單) → 쪽지

“전단(傳單)”은 사전적으로는 ‘선전이나 광고 또는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이쪽’을 뜻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쪽지’나 ‘광고 쪽지’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제안하고 있는 ‘알림 쪽지’ 보다는 법령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쪽지’나 ‘광고 쪽지’로 바꾸어 쓰는 것이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4 조 (매체물의 범위)

- ④ 법 제7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매체물을 말한다.
 - 2.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쪽지)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청소년보호법 제 7 조 (매체물의 범위)

-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쪽지)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

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청소년보호법 제20조 (광고선전 제한)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쪽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파(傳播) → (널리) 퍼뜨림

“전파(傳播)”는 ‘전하여 널리 퍼뜨림’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전파하다는 ‘퍼뜨리다’로 바꾸어 쓰도록 권장한 바 있으며(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및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전파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강조하려면 ‘널리’라는 수식어를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 7 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널리) 퍼뜨리는) 신문을 제외한다.

◆ 정상(情狀) → 사정, 형편

정상(情狀)은 사전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정과 형편’ 또는 ‘딱하거나 가없는 상태’ 등을 의미한다. 정상의 동음이의어에는 正常(정상,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 正狀(정상, 正常의 상태), 情想(상, 감정과 생각을 아울러 이르는 말) 등이 있다. 따라서 한자를

◆ 정역(定役) → 노역(勞役)

함께 표기하지 않는 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동의어로는 정황(情況), 사정(事情) 등이 있고, 이 가운데 ‘사정’이라는 용어가 더욱 일상적으로 쓰이므로 의미를 파악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정상을 ‘사정’이나 ‘형편’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 바 있고(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법조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소년원법 시행령 제30조 등의 경우에는 “정상”을 아예 삭제하고, 행형법 제40조의 경우에는 ‘형편’이라고 고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순화안 중에 선택하여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30조 (징계집행의 유예·정지·면제)

- ① 원장은 정상을(→삭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징계의 집행을 유예·정지할 수 있다.

행형법 제40조 (위로금, 조위금)

- ① 수형자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형편)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정역(定役) → 노역(勞役)

“정역(定役)”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노역(勞役)이나 부역(賦役)’이라는 의미이다. 형법에서 정역이란 징역형 수형자에게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작업으로서,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교화의 목적으로 부과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정역을 ‘노역’이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06년 한글학회 등의 정비 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어놓고 있다.

형법 제67조 (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서 구치하여 정역(→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 정황(政況) → 상황

“정황(情況)”은 ‘일의 사정과 상황’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정황은 ‘형편’이나 ‘상황’으로 정비된 용어만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상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심판규칙 제11조 (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상황) 및 비행전력

행형법 제48조의2 (징벌집행의 유예)

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상황), 행형성적, 뇌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제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상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제척(除斥) → 직무집행배제(職務執行排除)

“제척(除斥)”은 사전적으로는 ‘배제하여 물리침’이라는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 일본형사소송법(제20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형법 제정시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말로 일반인에게 매우 생소한 용어이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본문에 나타난 표현대로 ‘직무집행 배제’ 또는 ‘배제’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이와 같은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직무집행배제)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배제)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형사소송법 제25조 (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직무집행배제), 기피, 회피)

-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의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 ② 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 조각(阻却) → 배제(排除)

“조각(阻却)”은 사전적으로 ‘물리치거나 방해함’의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지만, 형사법령에서는 형법 제310조(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와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있는 일정한 요건을 물리쳐 없앤다는 의미로서 ‘배제’ 또는 ‘제거’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선택하자면 강학상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배제’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배제)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조장(助長) → 부추김, 북돋움

조장(助長)은 ‘힘을 도와서 더 자라게 함’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조장하다’를 ‘돋구다’, ‘돋우다’로 바꾸어 쓰도록 권장한 바 있다(권장사용). 그런데 이 용어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살펴보면 ‘과소비 조장, 지역감정 조장’ 등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추기다’라고 바꾸어 쓰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소년원법 제39조에서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북돋우다’를 활용하여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조장하다’는 ‘부추기다’, ‘북돋우다’로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부추기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소년원법 제39조 (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자율성을 조장하고(→북돋우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 종결(終結) → 끝맺음

“종결(終結)”은 ‘일을 끝냄’이라는 의미이다. 반드시 한자어로 써야 할 필요는 없는 용어로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순화안으로 ‘마감’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는데, ‘마감’은 ‘정해진 기한의 끝’이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단순히 ‘끝남’에 중점이 두어진 것이 아니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강한 단어이므로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이 제안하고 있는 ‘끝맺음’, ‘매듭지음’, ‘마침’ 중 하나인 ‘끝맺음’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끝맺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 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종료(終了) → 끝냄, 끝남

종료(終了)는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를 끝마침’을 의미한다. ‘끝남’, ‘마침’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종료는 형법,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소년원법 시행령, 행형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청소년관련법령에서 흔히 사용된다.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는 말이지만 굳이 한자말인 종료(終了)라고 하기 보다는 ‘끝내다’, ‘마치다’ 등 순 우리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종료하다는 ‘끝내다’, ‘마치다’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 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의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 죄상(罪狀) → 구체적 범죄사실(具體的 犯罪事實)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끝낼)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15조 (위탁소년의 출석)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가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행하는 소년원(이하 “소년분류심사원”이라 한다)인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끝날) 때까지 소년부 청사 내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끝나지) 아니한 자

◆ 죄상(罪狀) → 구체적 범죄사실(具體的 犯罪事實)

“죄상(罪狀)”은 사전적으로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98조의 의미상 ‘죄상’은 ‘구체적 범죄사실’ 정도로 바꾸면 적절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과 보증금)

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죄상(→구체적 범죄사실)

◆ 죄적(罪迹) → 범죄(의) 흔적

“죄적(罪迹)”은 ‘죄를 저지른 증거가 되는 흔적’을 뜻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죄적’을 ‘범죄 자취’와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병행사용). 흔적과 자취 모두 유사한 말이지만, 흔적이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뜻하여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조문인 형법 제335조 등에 대입하여 볼 때에도 범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죄적은 ‘범죄의 흔적’으로 고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된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죄증(罪證) → 증거(證據)

“죄증(罪證)”은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범죄의 증거’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범죄 증거’라고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죄증”은 “죄증을 인멸”한다고 표현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형법은 “인멸(湮滅)”의 객체로 제155조(증거인멸죄)에서는 “증거(證據)”를, 제325조 제2항(준점유강취죄)과 제335조(준강도죄)에서는 “죄적(罪迹)”을 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제70조(구속의 사유)에서 “증거(證據)”를 들고 있으며(제1항 제2호), 형사소송규칙도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에서 “증거(證據)”를 들고 있다.

생각건대 “죄증(罪證)”이나 “죄적(罪迹)”은 모두 그 의미가 ‘범죄의 증거’ 또는 ‘범죄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증거(證據)”와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어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들은 모두 가장 일반적인 용어인 “증거”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죄증을(→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①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2. 도망하거나 죄증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중(重)한/경(輕)한 → 무거운/가벼운

이 표현들은 무겁고 가벼움을 나타내는 한자 ‘중(重)’과 ‘경(輕)’에 연체형 어미 ‘-한’을 붙인 것이다. 단순히 ‘무거운’ 또는 ‘가벼운’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 죄에는 중한(→무거운)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외에는 그 중한(→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증적(證迹) → 증거(證據)의 흔적(痕迹)

“증적(證迹)”은 사전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거나 자취’를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증거자료’ 또는 ‘흔적’으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증거흔적’으로(‘정비된 용어만 사용’ 의견),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증거자취’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취’와 ‘흔적’은 같은 의미이지만 일상적으로는 ‘흔적’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된다고 생각된다. 나

◆ 지득(知得) → 알게 됨

아가 형사소송법 제141조와 제211조의 문맥을 고려할 때 ‘증거의 흔적’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거의 존재를(→증거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증거의 흔적)가 있는 때

◆ 지득(知得) → 알게 됨

“지득(知得)”은 사전적으로 ‘깨달아 알게 됨’을 의미한다. 즉 지득이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업무상비밀 누설죄와 피의사실공포죄에서 변호사 등의 업무자나 수사기관이 그 사무처리 또는 직무수행 중 지득한 타인·피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지득하다’를 ‘알다’, ‘알게 되다’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복지법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지려천박(智慮淺薄) → 지적능력부족(知的能力不足)

“지려천박(智慮淺薄)”에서 ‘지려(智慮)’는 ‘슬기로운 생각’을, ‘천박(淺薄)’은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얕거나,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러움’을 뜻한다. 따라서 지려천박이란 지식이 결핍하여 사려가 불완전한 것을 말한다. 이는 ‘지적능력부족’이라고 고치면 그 의미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도 ‘지려천박’은 ‘지적능력부족’이라고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06년 한글학회 등의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어놓고 있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지적 능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속적(持續的)으로 →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持續)은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또는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함’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지속적으로’를 ‘꾸준히’, ‘끊임없이’라고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지장(指章) → 손도장

⇒ “인장(印章)” 참조.

형사소송법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인장(→도장)이 없으면 지장(→손도장)으로 한다.

◆ 지체(遲滯)없이 → 즉시(即時)

“지체(遲滯)”는 일반적으로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이라는 의미이지만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을 말한다. “지체 없이”는 일본법상의 “遲滯なく”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어떠한 일을 이러한 늦어짐 없이 ‘바로’ 또는 ‘즉시’ 한다는 의미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지체 없이”를 모두 “바로”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지체없이”를 모두 ‘바로’로 바꾸는 경우 어색한 느낌이 드는 조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자어이지만 일상용어로 정착된 ‘즉시(即時)’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여러 조문(제16조, 제88조, 제101조, 제172조 등)에서 이미 “즉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소년법 제 8 조 (통지)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즉시)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제 7 조 (수용절차)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없이(→즉시)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66조 (과태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직근(直近) → 바로 위(의)

“직근(直近)”은 사전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뜻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직근’이라는 용어는 예외 없이 ‘상급법원’이라는 어휘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양자를 동시에 적고 풀어 쓰면 ‘해당법원을 관할하는 바로 위 등급의 법원’이라는 의미가 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은 이를 ‘가장 가까운’이라는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것인지 관념적인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 ‘직근’은 ‘바로 위(의)’로 풀어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또한 이전의 ‘직근’을 ‘바로 위의’로 풀어 사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6 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참작(參酌) → 고려(考慮)

“참작(參酌)”은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함’이라는 의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헤아림’이라는 순화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 및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모두 이를 ‘고려’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제51조(양형의 조건)와 제59조(선고유예)의 “참작”을 ‘고려’로 바꾸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제98조(보석과 보증금),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65조(증인의 범정의신문)에서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참작”은 ‘고려’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 제12조 (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고려)하여야 한다.

소년원법 제41조 (교육계획)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등을 참작(→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③ 과태료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고려)하여야 한다.

◆ 참절(僭竊) → 불법점령(不法占領)

“참절(僭竊)”이란 ‘제 분수에 넘치는 것을 감히 훔친다’는 뜻으로, 내란죄에 있어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영토주권을 배제하는 것, 즉 영토내란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볼 때, 참절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점령 한다’라고 고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할 때 일반인들도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006년 한글학회 등의 정비 기준도 ‘참절하거나’는 ‘불법으로 점령하거나’로 정비하는 안을 내어놓고 있다.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불법점령)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처단(處斷) → 처벌(處罰)

“처단(處斷)”이란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 처벌함’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처단하다’를 ‘처벌하다’, ‘형을 과하다’라는 정비된 용어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06년 한글학회 등의 정비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어놓고 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첨부(添附) → 붙임

“첨부(添附)”는 사전적으로 ‘안건이나 문서 따위를 덧붙임’이라는 의미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우리말 ‘붙임’으로 바꾸어 쓰면 문맥이 매끄러우면서 그 의미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보호법 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붙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상청소년 등에 대한 수사 등)

-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붙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초래(招來) → 가져옴

초래(招來)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함’ 또는 ‘불러서 오게 함’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초래하다’를 ‘가져오다’, ‘하게

하다’, ‘일으키다’와 병행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병행사용),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볼 때 ‘가져오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소년원법 시행령 제 5 조 (보호소년등의 처우)

- ② 소년원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2 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가져올)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가져올) 수 있는 약물일 것

◆ 초일(初日) → 첫 날

“초일(初日)”은 한자어의 뜻 그대로 ‘어떤 시기나 기간의 맨 첫 날’을 의미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쉬운 우리말 ‘첫 날’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첫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첫 날)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축탁(囑託) → 현재대로

“축탁(囑託)”은 사전적으로 단순히 ‘일을 부탁하여 맡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용되는 “축탁”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 사이에서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는 일’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라 할 수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일상생활용어인 ‘부탁’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부탁’이라는 용어가 “축탁”이 갖는 규범적 의미를 대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현재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축탁”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77조(구속의 축탁),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는 “전축(轉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다시 축탁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축탁”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두고(제41조, 제139조 등), “전축”은 ‘다시 축탁함’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있다(제297조 제2항).

소년심판규칙 제48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축탁(→현재대로)하여 할 수 있다.

◆ 최초(最初)/최후(最後)·최종(最終) → 처음·첫/마지막

“최초”나 “최후” 또는 “최종”은 모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용어이다. 그러나 한자어 순화의 관점에서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고 어감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있으면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쉬운 우리말 ‘처음’과 ‘마지막’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또한 “최초”와

“최종”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순화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첫)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록대상자의 결정 절차)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예비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비결정 대상자가 최종(→마지막)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기 3월 전까지의 행형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행형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년원법 제31조 (학적관리)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마지막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취하(取下) → 철회(撤回), 취소(取消)

“취하(取下)”는 사전적으로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을 의미한다. 소송법상 “취하”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검사의 공소취소, 상소취하, 재심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일상적

◆ 타인(他人) → 다른 사람

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법령에서만 사용되는 말이므로, 일반인들에게 친근하여 그 의미를 더 이해하기 쉬운 ‘철회’나 ‘취소’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및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취하’를 ‘철회’나 ‘취소’로 정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45조 (항고의 취하(→취소))

- ①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취소)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취소))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취소)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타인(他人) → 다른 사람

“타인(他人)”은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법령용어 순화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도 같은 견해이다.

소년원법 제16조 (포상)

- 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을 타인(→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행위

◆ 탈환(奪還) → 도로 뺏음

“탈환(奪還)”은 ‘빼앗겼던 것을 도로 빼앗아 찾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도로 뺏다’라는 쉬운 말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병행사용),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탈환하다’는 ‘도로 뺏다’로 정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재물을 도로 빼앗기는데)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통고(通告)·통보(通報)·통지(通知) → 알림·보고함

통고(通告)는 ‘서면(書面)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을, 통보(通報)는 ‘통지하여 보고함. 또는 그 보고’를, 통지(通知)는 ‘기별을 보내

어 알게 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알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일상적인 용어인 '알리다', '보고하다'라고 고치면 일반인들이 더욱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통고함'은 '알려 드림'이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하고, '통보하다'는 '알리다'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병행사용), '통지하다'도 '알리다'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병행사용)는 의견을 내어놓았던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보여주고 있다.

[1] 통고(通告)

소년법 제11조 (조사명령)

② 소년부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보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상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④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알릴) 수 있다.

[2] 통보(通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9 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알려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알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결과의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실시결과를 거짓으로 알린 경우)

[3] 통지(通知)

소년법 제 8 조 (통지)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알려야) 한다.

소년원법 제27조 (분류심사결과 등의 통지)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분류심사결과 및 의견 또는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조사결과 및 의견을 법원 소년부에 통지하여야(→알려야) 한다.

◆ 통산(通算) → 합산(合算)

“통산(通算)”은 사전적으로는 ‘전부를 통틀어 계산함’을 의미한다. 법률에서 통산이란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본래의 기간에 포함되는 다른 기간을 통틀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경합범의 형의 집행과 이미 집행한 형기의 통산 등의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들을 살려서 ‘통산하다’는 ‘합(산)하다’,

◆ 퇴거(退去) → 나감

‘통틀어 계산하다’, ‘합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병행사용),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형법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합산))

-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⑤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합산)한다.

◆ 퇴거(退去) → 나감

“퇴거(退去)”는 ‘있던 자리에서 옮겨 가거나 떠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퇴거시키다’는 ‘나가게 하다’라는 쉬운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에서도 ‘퇴거하게 하거나’를 ‘나가게 하거나’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행형법 제17조 (신체 검사 등)

- ② 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나가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방실로부터 나가게 하는 등의 격리)

◆ 특칙(特則) → 특례(特例)

“특칙(特則)”의 한자를 풀어 쓰면 ‘특별한 규칙’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무리한 한자식 조어이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그 법령’을 의미하는 ‘특례(特例)’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역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특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특례))

-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0조 (서명날인의 특칙(→특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포함)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파기(破棄) → 현재대로

“파기(破棄)”는 사전적으로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이라는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상소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제시하고 있는 ‘깨버림’ 또는 ‘없애버림’이라는 순화안은 무리한 견해로 보인다. 오히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같이 현재대로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파기자판(→파기와 직접판결))

-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재판(→직접판결)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파기(→현재대로)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항고의 재판)

-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현재대로)하고 스스로 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현재대로)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46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현재대로)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현재대로)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현재대로)한다.

◆ 파기자판(破棄自判) → 파기(破棄)와 직접판결(直接判決)

“파기(破棄)”는 사전적으로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이라는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상소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이다. 따라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판(自判)”은 무리한 한자식 조어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법제연구회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자판”의 의미가 본문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한자를 함께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있으나, 바꾸어 쓸만한 쉬운 표현이 있다면 굳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제호의 의미를 파악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396조의 제호는 ‘파기와 직접판결’ 정도로 바꾸면 쓰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96조는 이미 본문에서 “직접판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파기자판(→파기와 직접판결))

-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재판(→직접판결)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파기와 직접판결))

-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 판명(判明) → 밝혀짐

“판명(判明)”은 ‘어떤 사실을 판단하여 명백하게 밝힘’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판명되다’는 ‘(명백히) 밝혀지다’, ‘드러나다’라고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소년법 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 ①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42조 (12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중에 소년이 12세미만인 것이 판명된(→밝혀진) 때에는 그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소년이 그 처분당시 12세미만임이 판명된(→밝혀진) 때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밝혀진)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포상(褒賞) → 상을 줌

“포상(褒賞)”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줌’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포상하다는 ‘상주다’라는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

◆ 한(限)하여 → (경우에)만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소년원법 제16조 (포상)

- 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상을 줄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상을 받은)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60조 (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상을 줄 수) 있다.

◆ 한(限)하여 → (경우에)만

“한(限)하여”는 일본어의 ‘限(かぎ)て’라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표현으로서, 우리말로는 ‘-(경우에)만’ 정도의 의미이므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소년심판규칙 제29조 (기록의 열람, 등사)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경우에만)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개시결정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 ③ 제32조제1항제3호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 안

에서 1차에 한하여(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한도(限度) → 범위 안

“한도(限度)”의 원래 의미는 ‘일정한 정도 또는 한정된 정도’를 의미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한도”는 ‘무엇을 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범위 안’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 ②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범위 안)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소년법 제27조 (검증, 압수, 수색)

- ②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범위 안)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함에는 → 하는 경우에는

“-함에는”이라는 표현은 일본어 ‘-をするには’라는 표현을 직역한 것이다.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하는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 ④ 제32조제3항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동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

◆ 항거(抗拒) → 저항(抵抗)

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집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년심판규칙 제 2 조 (결정서)

① 소년부판사가 결정을 함(→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
4. 항고·재항고에 대한 결정(법 제45조, 제47조)

소년심판규칙 제 5 조 (통지의 방식)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하는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항거(抗拒) → 저항(抵抗)

“항거(抗拒)”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함’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및 한글학회 2006년 정비 기준 모두에서 ‘항거하다’를 ‘대들다’, ‘저항하다’, ‘맞서다’로 정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도로 빼앗기는데 저항)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해득(解得) → 알아봄

“해득(解得)”의 사전적 의미는 ‘뜻을 깨쳐 앎’이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및 한글학회 2006년 정비기준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이를 ‘깨우쳐 앎’ 또는 ‘알음’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8조의 취지는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일정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한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원래 있었던 글자의 모양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해득할 수 있도록”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도로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② 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알아

볼)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해촉(解囑) → 해임(解任)

“해촉(解囑)”은 위촉(委囑)의 반대말로 쓰인다.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을 뜻하고, ‘맡김’으로 순화되어야 할 일본어투의 말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해촉은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위촉을 맡김, 위탁, 임명 등으로 바꾸어 쓴다고 하였으나, 해촉의 반대말인 위촉은 대부분 ‘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경우 해촉은 ‘해임(解任)’이라는 말로 풀어쓸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해촉(解囑)을 ‘위촉을 풀음’, ‘위촉해제’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권장사용), 법제처 2003년 정비편람 및 한글학회 2006년 정비 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소년원법 제51조의2 (보호소년지도위원)

③ 보호소년지도위원의 위촉·해촉(→임명·해임)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소년심판규칙 제88조 (보호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임명 및 해임))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등의 선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호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검토위원의 임기)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검토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등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해임)할 수 있다.

◆ 해태(懈怠) → 게을리 함

“해태(懈怠)”는 사전적으로 ‘게을리 함’의 의미이다. 국회 법률용어 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 또한 사전적 의미의 우리말 ‘게을리 함’으로 풀어쓰는데 동의하고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게으름’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21조(감독)의 문맥을 볼 때 이는 ‘게을리 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한 사람이 게을리 하여 고소기간을 넘긴 것은)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21조 (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게을리 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해(害)하다 → 해치다

“해(害)하다”는 표현은 같은 뜻의 일본어 ‘害する’라는 표현을 직역한 것이다. 우리말인 ‘해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 ② 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해쳐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해치는)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 행상(行狀) → 행형 태도(行刑 態度)

“행상(行狀)”은 사전적으로 ‘하는 짓이나 태도’를 뜻한다. 형법에서 행상이란 수형자의 행형 태도, 즉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언행에 대하여 매긴 성적을 말한다. 따라서 행상은 ‘행형 태도’라고 고쳐 써야 일반인과 청소년이 그 의미를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행형 태도가 양호하여 누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행(行)함 → 함, 수행(遂行)함

“행(行)함”이라는 표현은 일정한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의 일본어 ‘行(おこな)う’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함’ 또는 ‘수행(遂行)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령상 “행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함’ 또는 ‘수행함’으로 바꾸어 써도 의미의 차이가 없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제246조(국가소추주의)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미 “수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소년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

◆ 허부(許否) →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

치를 행함으로써(→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원법 제15조 (징계)

② 징계는 본인의 심신상황을 참작하여 교육적으로 행하여야(→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15조 (위탁소년의 출석)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가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행하는(→수행하는) 소년원(이하 “소년분류심사원”이라 한다)인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청사 내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수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허부(許否) →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

“허부(許否)”는 한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허가 여부’를 의미하는 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부”는 ‘-한지 아닌지’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허부”는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또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허가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5조 (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여부(→허가할 것인지 아닌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허위(虛僞) → 거짓

“허위(虛僞)”는 사전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즉 ‘거짓’을 의미한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허위”를 ‘거짓’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실제로 “허위”를 “거짓”으로 바꾸어 쓰고 있으며(제300조, 제301조, 제370조 등), 형사소송법도 제157조(선서의 방식) 및 제170조(선서)에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다른 “허위”라는 표현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제156조(무고),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제217조(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 제327조(강제집행면

◆ 현상(現狀) → 현재(現在)의 상태(狀態)

탈),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서의 “허위” 또한 ‘거짓’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소년법 제69조 (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거짓)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거짓)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거짓)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 허위(→거짓)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상(現狀) → 현재(現在)의 상태(狀態)

“현상(現狀)”은 사전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자를 함께 쓰지 않는 경우 이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

물의 모양과 상태’를 의미하는 ‘현상(現象)’ 등과 혼동될 수 있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용어를 축약하여 법문에 사용함으로써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를 풀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현상(現狀)”의 경우 ‘현재의 상태’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49조 (검증등의 조서)

-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 현저(顯著) → 뚜렷함, 두드러짐

“현저(顯著)”하다는 ‘뚜렷이 드러나다’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쉬운 말로 하자면 ‘뚜렷한’, ‘뚜렷이’, ‘두드러지게’ 정도로 바꿀 수 있다. 법제처 1996년 순화편람에서는 ‘뚜렷한’, ‘뚜렷이’, ‘두드러지게’라고 정비된 용어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글학회 2006년 정비 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소년법 제43조 (항고)

- ① 제32조의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뚜렷이) 부당한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60조 (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뚜렷)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호선(互選) → 서로 투표하여 뽑음

아동복지법 제12조 (친권상실 신고등의 청구)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뚜렷이)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호선(互選) → 서로 투표하여 뽑음

“호선(互選)”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또는 그런 선거’를 의미한다. 어려운 한자말이므로 알기 쉽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는 1996년 순화편람에서 ‘호선’은 ‘서로 뽑음’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병행사용), 한글학회 2006년 정비 기준에서도 같은 정비안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등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보면 ‘투표하여’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더욱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법조문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는 한 이처럼 풀어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호선’은 ‘서로 뽑음’, ‘서로 투표하여 뽑음’, ‘서로 투표하여 선출함’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 ② 분과회의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3 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 호창(呼唱) → 부름

“호창(呼唱)”은 사전적으로 ‘큰 소리로 부름’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상 이 용어가 쓰이는 곳은 제211조 한 곳인데, 여기서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사유를 볼 때 “호창(呼唱)되어”는 범행 현장에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정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소리 높여)부름’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으나,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히 ‘부름’이라고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때

◆ 환부(還付) → 반환(返還), 돌려줌

“환부(還付)”는 사전적으로 ‘도로 돌려 줌’이라는 의미로서 ‘환급(還給)’ 또는 ‘반환(返還)’과 동일한 의미이다. 법령상 법원, 행정기관 등의 처분으로서 물건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환급’을,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반환’을,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반환’과 ‘돌려줌’을 선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돌려줌’이라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고, 축약명사형의 한자어로는 환급과 반환 중에서 ‘반환’이 좀더 일상적인 용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돌려 줌’ 또는 ‘반환’이라는 용어를 일률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서술형으로 사용할 때는 ‘돌려 줌’이라는 표현을, 축약명사형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04조 (보증금의 환부(→반환))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반환), 가환부(→임시반환))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돌려주어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임시로 돌려줄)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임시로 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반환))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돌려줄) 수 있다.

◆ 흠결(欠缺) → 흠

“흠결(欠缺)”은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용어로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흠과 결함’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흠’, ‘부족’ 또는 ‘모자람’ 등의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흠’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 표현이 쓰이는 곳은 제96조(자료의 제출등) 한 곳인데, 여기서 “흠결”은 ‘흠’으로 바꾸어 쓰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 (자료의 제출등)

- ④ 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흠)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